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세입, 정책기획관,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

2014. 12.



산업통상자원부

201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세입·정책·기획관·통상정책국·통상협력국·통상교섭실

2014·12

산업통상자원부

목 차

1. 정책기획관	1
I. 세입	3
(1) 토지대여료(일반회계)	6
(2) 건물대여료(일반회계)	10
(3) 기타재산수입(일반회계)	14
(4) 기타경상이전수입(일반회계)	16
II. 세출	19
<일반회계>	
(1) 산업통상자원행정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22
(2) 변화관리능력개발	36
(3) 국내외교육훈련	48
(4) 사이버안전센터구축운영(정보화)	53
2. 통상정책국	61
<일반회계>	
(1) 통상정책수립및정책홍보	64
(2) 다자통상협상추진및글로벌경제협력강화	70
(3) 국제기구분담금	77
(4) 무역투자정책수립운영	81
3. 통상협력국	85
<일반회계>	
(1) 양자산업협력	88
(2) 산업자원협력개발지원(ODA)	98
(3) 국제면화자문위원회분담금(ODA)	105
(4) 한중일통상협력기반구축	108

4. 통상교섭실	113
----------------	-----

〈일반회계〉

(1) 자유무역협정체결및후속조치	116
(2) 통상분쟁대응	123

정책 기획관

세 입

□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 (A)	2015예산 (B)	증 감 (B-A)	%
일반회계	147,750	235,247	198,252	△36,995	△15.7

관	항	목	2013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 (B)	증 감 (B-A)	%
합 계			147,750	235,247	198,252	△36,995	△15.7
재산수입			25,224	28,214	32,430	4,216	14.9
	관유물 대여료		9,059	8,580	10,534	1,954	22.8
		▪ 토지대여료	7,251	6,460	7,022	562	8.7
		▪ 건물대여료	1,808	2,120	3,512	1,392	65.7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6,165	19,634	21,896	2,262	11.5
		▪ 기타재산수입	16,165	19,634	21,896	2,262	11.5
경상이전수입			121,941	205,684	164,840	△40,844	△19.9
	벌금,몰수금및과태료		349	51	745	694	1360.8
		▪ 벌금및과료	0	51	0	△51	△100
		▪ 과태료	349	0	145	145	100
		▪ 과징금	0	0	600	600	100
	변상금및위약금		0	10	10	0	0
		▪ 위약금	0	10	10	0	0
	가산금		0	0	4	4	100
		▪ 가산금	0	0	4	4	100
	기타경상이전수입		121,592	205,623	164,081	△41,542	△20.2
		▪ 기타경상이전수입	121,592	205,623	164,081	△41,542	△20.2
재화및용역판매수입			47	30	30	0	0
	잡수입		47	30	30	0	0
		▪ 기타잡수입	47	30	30	0	0
수입대체경비수입			538	531	552	21	4
	잡수입		538	531	552	21	4
		▪ 기타잡수입	538	531	552	21	4
관유물매각대			0	788	400	△388	△49.2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0	788	400	△388	△49.2
		▪ 토지매각대	0	788	400	△388	△49.2

토지대여료(일반회계)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예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 토지대여료	5,717	6,460	7,022	562	8.7

□ 세입개요

○ 세입 내용

- 군산·마산·울촌·대불·울산·김제·동해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토지 임대료 및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에게 임대한 토지 임대료

○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25조, 제28조, 제29조 및 제32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 세입실적

○ 연도별 세입실적

(백만원, %)

구분	'09		'10		'11		'12		'13		연평균증가율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 토지대여료	2,851	4,903	3,614	4,345	3,848	4,457	6,000	12,821	5,717	7,251	19.0	10.3
(전년대비증가율)	-	-	26.8	△11.4	6.5	1.2	55.9	187.7	△4.7	△43.4		

□ 예산내역

○ 징수전망 및 산출근거

(백만원, %)

구분	금 액	산 출 근 거
'14년	6,460	○ 외국인투자지역 토지임대료 : 3,452백만원 ■ 천안 623,542,994 = 468,632 × 3,024 × 44% × 100% × 100% ■ 월전 36,026,884 = 99,060 × 924 × 48% × 82% ×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불 693,116,779 = 1,170,576 × 636 × 95% × 98% × 100% ▪ 오창 217,219,294 = 446,269 × 2,172 × 30% × 90% × 83% ▪ 구미 28,740,209 = 329,433 × 1,488 × 13% × 55% × 82% ▪ 구미부품 95,794,744 = 255,469 × 1,488 × 70% × 48% × 75% ▪ 인주 118,827,356 = 159,457 × 1,656 × 60% × 100% × 75% ▪ 사천 554,792,010 = 495,865 × 2,136 × 60% × 97% × 90% ▪ 달성 22,574,718 = 104,187 × 1,284 × 25% × 90% × 75% ▪ 장안1 84,450,786 = 418,156 × 2,376 × 25% × 85% × 40% ▪ 장안2 37,564,810 = 368,977 × 3,636 × 20% × 35% × 40% ▪ 당동 86,174,349 = 239,355 × 4,584 × 33% × 70% × 34% ▪ 지사 304,183,684 = 298,070 × 4,104 × 35% × 95% × 75% ▪ 오성 21,908,561 = 362,331 × 3,876 × 30% × 13% × 40% ▪ 포항부품 10,676,205 = 327,240 × 1,740 × 5% × 50% × 75% ▪ 익산부품 35,645,746 = 320,440 × 1,236 × 20% × 60% × 75% ▪ 창원부품 7,966,275 = 71,368 × 5,412 × 5% × 55% × 75% ▪ 어연 30,264,935 = 60,557 × 3,288 × 38% × 100% × 40% ▪ 추팔 25,650,713 = 88,976 × 2,772 × 26% × 100% × 40% ▪ 포승 14,726,363 = 95,773 × 3,372 × 30% × 38% × 40% ▪ 현곡 99,453,563 = 500,710 × 2,844 × 20% × 97% × 36% ▪ 미음 107,777,490 = 331,909 × 5,412 × 20% × 40% × 75% ▪ EEW 11,545,133 = 52,491 × 1,023 × 43% × 100% × 50% ▪ 날코 171,332,700 = 29,668 × 11,550 × 100% × 100% × 50% ▪ 천안5 11,673,142 = 336,208 × 2,480 × 10% × 20% × 70% <p>* 임대료 = 임대면적(m²)×단가(원)×비감면율×입주율×지분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산자유무역지역: 589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6원(m²당단가)}×225,860m²+43원(50%감면)×552,567m²+69,174m²×86원)}×12월 ○ 울춘자유무역지역: 82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원(m²당 단가) × 170,000m²(임대 예상면적) × 12월=82백만원 ○ 대불자유무역지역: 758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2원(m²당 단가) × 877,314m²(임대 예상면적) × 12월=758백만원 ○ 울산자유무역지역: 228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부지(403,352m²) × 예상임대료(150원/m²) × 예상입주율(31.4%) × 12개월=228백만원 ○ 김제자유무역지역: 1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원(m²당 임대료) × 166,666m² × 12월=100 ○ 동해자유무역지역: 3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원(m²당 단가)×98,090m²(임대예상면적)×12월=30백만원 ○ 마산자유무역지역: 1,221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1원/m², 월 * 631,988m² * 12월= 1,221백만원
‘15년	7,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불자유무역지역: 702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8원(m²당 단가)×859,797.04m²(임대 예상면적)×12월 ○ 울춘자유무역지역: 67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원(m²당 단가)×110,000m²(임대 예상면적)×12월=67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해자유무역지역: 26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4원(㎡당 단가)×65,398㎡(임대 예상면적)×12월=26백만원 ○ 마산자유무역지역: 1,47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원(㎡당 단가)×615,364㎡(임대 예상면적)×12월=1,462백만원 ○ 울산자유무역지역: 61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4원(㎡당 단가)×382,396㎡(임대 예상면적)×12월=615백만원 ○ 김제자유무역지역: 168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원(㎡당 단가)×200,000㎡(임대 예상면적)×12월=168백만원 ○ 군산자유무역지역: 582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원(㎡당 단가)×196,756㎡+50원(50%감면)×552,567㎡+48,777.7㎡×25원}×12월=582백만원 ○ 외국인투자지역 토지임대료: 3,389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 629,442,134 = 468,632 × 3,288 × 43% × 95% × 100% ▪ 월전1 29,279,908 = 52,768 × 1,632 × 85% × 40% × 100% ▪ 월전2 18,053,880 = 46,292 × 3,000 × 100% × 20% × 65% ▪ 대불 658,406,859 = 1,170,57 × 720 × 84% × 93% × 100% ▪ 오창 211,392,109 = 446,269 × 2,292 × 30% × 83% × 83% ▪ 구미 27,724,610 = 329,433 × 1,548 × 13% × 51% × 82% ▪ 구미부품 95,601,609 = 255,469 × 1,512 × 66% × 50% × 75% ▪ 인주 119,860,638 = 159,457 × 1,728 × 58% × 100% × 75% ▪ 사천 546,405,544 = 495,865 × 2,148 × 57% × 100% × 90% ▪ 달성 21,545,142 = 104,187 × 1,332 × 23% × 90% × 75% ▪ 장안1 83,057,423 = 418,156 × 2,796 × 24% × 74% × 40% ▪ 장안2 37,564,810 = 368,977 × 3,636 × 14% × 50% × 40% ▪ 당동 81,350,589 = 239,355 × 4,596 × 25% × 87% × 34% ▪ 지사 304,520,891 = 298,070 × 4,308 × 34% × 93% × 75% ▪ 오성 23,481,484 = 362,331 × 3,876 × 38% × 11% × 40% ▪ 포항부품 10,472,989 = 327,240 × 1,524 × 7% × 40% × 75% ▪ 익산부품 34,754,602 = 320,440 × 1,236 × 30% × 39% × 75% ▪ 창원부품 7,995,243 = 71,368 × 5,412 × 6% × 46% × 75% ▪ 어연 30,418,992 = 60,557 × 3,588 × 35% × 100% × 40% ▪ 추팔 25,304,774 = 88,976 × 2,844 × 25% × 100% × 40% ▪ 포승 15,291,807 = 95,773 × 3,564 × 32% × 35% × 40% ▪ 현곡 90,777,874 = 500,710 × 3,012 × 19% × 88% × 36% ▪ 미음 90,484,700 = 331,909 × 5,268 × 15% × 46% × 75% ▪ EEW 11,545,133 = 52,491 × 1,023 × 43% × 100% × 50% ▪ 날코 171,332,700 = 29,668 × 11,550 × 100% × 100% × 50% ▪ 천안5 11,691,969 = 336,208 × 2,484 × 40% × 5% × 70% ▪ 문막 800,293 = 99,132 × 2,484 × 10% × 5% × 65%
‘16년	7,6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지역 토지임대료 : 3,2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공시지가 상승률 및 입주기업수 증가에 따라 매년 2% 증가O 계상 ○ 대불자유무역지역 : 7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8원(㎡당 단가) × 863,223㎡(임대 예상면적) × 12월=704백만원 ○ 동해자유무역지역 : 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4원(㎡당 단가)×130,787㎡(임대예상면적)×12월=5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산자유무역지역 : 2,0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76원/㎡, 월 × 615,000㎡ × 12월 = 2,036백만원 ○ 울촌자유무역지역: 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원(㎡당 단가) × 100,000㎡(임대 예상면적) × 12월=61백만원 ○ 김제자유무역지역 : 1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원(㎡당 단가) × 200,000㎡(임대 예상면적) × 12월=168백만원 ○ 울산자유무역지역 : 8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7원(㎡/월) × 403,735.5㎡ × 12월 × 1.0(예상입주율) = 858백만원 ○ 군산자유무역지역: 5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료 면제기업의 임대료 납부(100%면제→50%면제)(562백만원)
‘17년	8,1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지역 토지임대료 : 3,5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공시지가 상승률 및 입주기업수 증가에 따라 매년 2% 증가 계상 ○ 대불자유무역지역 : 7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8원(㎡당 단가) × 863,223㎡(임대 예상면적) × 12월=704백만원 ○ 동해자유무역지역 : 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4원(㎡당 단가)×154,016㎡(임대예상면적)×12월=62백만원 ○ 마산자유무역지역 :2,0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76원/㎡, 월 × 615,000㎡ × 12월 = 2,036백만원 ○ 울촌자유무역지역: 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원(㎡당 단가) × 100,000㎡(임대 예상면적) × 12월=61백만원 ○ 김제자유무역지역 : 2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원(㎡당 단가) × 250,000㎡(임대 예상면적) × 12월=210백만원 ○ 울산자유무역지역 : 8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7원(㎡/월) × 403,735.5㎡ × 12월 × 1.0(예상입주율) = 858 ○ 군산자유무역지역: 5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료 면제기업의 임대료 납부 : 50%면제→임대료전액 납부 100%면제→50%면제(563백만원)
‘18년	8,135	○ 상동

○ 금년도 및 중기계확상 특이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세외수입 및 자체수입 증대방안 : 해당사항 없음

건물대여료(일반회계)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예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 건물대여료	2,084	2,120	3,512	1,392	65.7

□ 세입개요

○ 세입 내용

- 마산, 동해, 대불, 군산 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물류창고 및 청사·업무지원동 임대료

○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28조, 제29조 및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 세입실적

○ 연도별 세입실적

(백만원, %)

구분	'09		'10		'11		'12		'13		연평균증가율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 건물대여료	1,612	1,442	2,029	1,536	2,029	1,460	2,029	1,506	2,084	1,808	6.6	5.8
(전년대비증가율)	-	-	25.8	6.5	-	△4.9	-	31.5	2.7	20		

□ 예산내역

○ 징수전망 및 산출근거

(백만원, %)

구분	금 액	산 출 근 거
'14년	2,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산자유무역지역 : 59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사동 : 2,174,680원(월금액)×12월×1.1(증감율)=29백만원 ▪ 업무지원동 : 7,976,280원(월금액)×12월×1.1(증감율)=105백만원 ▪ 물류동 : 12,238,190원(월금액)×12월=147백만원 ▪ 표준공장 A타입 5개동: 17,096,310원(월금액)×12월×1.1(증감율)=226백만원 ▪ 표준공장 B타입 2개동 : 7,399,050원(월금액)×12월×2개동=89백만원 ○ 대불자유무역지역 : 96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공장(46백만원)+지원업체(50백만원)=96백만원 ○ 울산자유무역지역 : 8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사동: 1,130㎡×3,650원(예상임대료)×12개월×30%(예상입주율)=14.8백만원 ▪ 표준공장(경공업동)임대료 : 10,957㎡×1,220(예상임대료)×12개월×30%(예상입주율) + 10,957㎡×1,220(예상임대료)×3개월×30%(예상입주율) = 60.2백만원 ▪ 표준공장(중공업동)임대료: 8,736㎡×1,345(예상임대료)×3개월×30%(예상입주율)=10.5백만원 ○ 동해자유무역지역 : 71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공장 경공업동 401원(㎡당)×4,162㎡(임대예상면적)×12월=20백만원 ▪ 표준공장 중공업동 370원(㎡당)×6,863㎡(임대예상면적)×12월=30백만원 ▪ 청사동 지원시설 2,010원(㎡당)×401㎡(임대예상면적)×12월=9백만원 ▪ 신축표준공장('13.12월 연면적 12,207㎡ 준공예정) 400원(㎡당 예정가 격)×2,441㎡(임대예상면적)×12월=12백만원 ○ 마산자유무역지역 : 1,274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축3호동 : 43,148.47㎡×989(평균임대료)×12=512백만원 ▪ 신축8호동 : 18,053.84㎡×1,016(평균임대료)×12=220백만원 ▪ 신축9호동 : 18,053.84㎡×1,016(평균임대료)×12=220백만원 ▪ 공공 건물 : 322백만원(생활관, 공공건물내 지원업체)
'15년	3,5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불자유무역지역 : 344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공장(187백만원, 21,687.04㎡) + 지원업체(57백만원, 1,462.80㎡) ○ 동해자유무역지역 : 204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공장 1동 384원(㎡당평균단가)×4,162㎡(임대예상면적)×12월 = 19백만원 ▪ 표준공장 2동 325원(㎡당평균단가)×6,863㎡(임대예상면적)×12월 = 26백만원 ▪ 표준공장 3동 344원(㎡당평균단가)×12,207㎡(임대예상면적)×12월 = 50백만원 ▪ 청사동 지원시설 1,909원(㎡당)×401㎡(임대예상면적)×12월 = 9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산자유무역지역: 1,872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축3호동 : $43,648.47\text{m}^2 \times 876(\text{평균임대료}) \times 12\text{개월} = 459\text{백만원}$ ▪ 신축8호동 : $18,553.84\text{m}^2 \times 1,019(\text{평균임대료}) \times 12\text{개월} = 227\text{백만원}$ ▪ 신축9호동 : $18,553.84\text{m}^2 \times 1,019(\text{평균임대료}) \times 12\text{개월} = 227\text{백만원}$ ▪ 공공 건물 : 257백만원 (기숙사, 공공건물내 지원업체) ○ 울산자유무역지역: 258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공장(경공업동)임대료: $10,957\text{m}^2 \times 1,220(\text{예상임대료}) \times 12\text{개월} \times 30\%(\text{예상 입주율}) \times 2\text{동} = 60.5\text{백만원}$ ▪ 표준공장(중공업동)임대료: $8,736\text{m}^2 \times 1.345(\text{예상임대료}) \times 12\text{개월} \times 30\%(\text{예상 입주율}) = 10.5\text{백만원}$ ▪ 청사동: $1,305\text{m}^2 \times 5,080\text{원} \times 10\%(\text{부가세}) \times 12\text{개월} = 87\text{백만원}$ ○ 군산자유무역지역 : 834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사동 : $2,456,200\text{원}(\text{월금액}) \times 12\text{월} \times 1.1(\text{증감율}) = 33\text{백만원}$ ▪ 업무지원동 : $6,760,090\text{원}(\text{월금액}) \times 12\text{월} \times 1.1(\text{증감율}) = 89\text{백만원}$ ▪ 물류동 : $12,827,360\text{원}(\text{월금액}) \times 12\text{월} = 154\text{백만원}$ ▪ 표준공장 A타입 5개동: $15,264,220\text{원}(\text{월금액}) \times 12\text{월} \times 1.1(\text{증감율}) = 183\text{백만원}$ ▪ 표준공장 B타입 2개동 : $6,241,480\text{원}(\text{월금액}) \times 12\text{월} \times 2\text{개동} = 75\text{백만원}$
'16년	3,5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불자유무역지역 : 102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공장(면적: $5,691.01\text{m}^2$) : 47,290천원 ▪ 청사동 및 업무지원동(면적: $1,396.95\text{m}^2$) : 54,527천원 ○ 동해자유무역지역 : 84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공장 1동 $384\text{원}(\text{m}^2\text{당평균단가}) \times 4,162\text{m}^2(\text{임대예상면적}) \times 12\text{월} = 19\text{백만원}$ ▪ 표준공장 2동 $325\text{원}(\text{m}^2\text{당평균단가}) \times 6,863\text{m}^2(\text{임대예상면적}) \times 12\text{월} = 26\text{백만원}$ ▪ 표준공장 3동 $344\text{원}(\text{m}^2\text{당 평균단가}) \times 7,324\text{m}^2(\text{임대예상면적}) \times 12\text{월} = 30\text{백만원}$ ▪ 청사동 지원시설 $1,909\text{원}(\text{m}^2\text{당}) \times 401\text{m}^2(\text{임대예상면적}) \times 12\text{월} = 9\text{백만원}$ ○ 마산자유무역지역 : 1,166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3호동 : $43,430.18\text{m}^2 \times 876(\text{평균임대료}) \times 12 = 456\text{백만원}$ ▪ 표준8호동 : $17,230.33\text{m}^2 \times 1,049(\text{평균임대료}) \times 12 = 216\text{백만원}$ ▪ 표준9호동 : $17,021.95\text{m}^2 \times 1,049(\text{평균임대료}) \times 12 = 214\text{백만원}$ ▪ 공공 건물 : 280백만원 (나눔관, 공공건물내 지원업체) ○ 울산자유무역지역 : 1,532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사동 : $5080\text{m}^2/\text{월}(\text{예상}) \times 1342.57\text{m}^2 \times 1.0(\text{예상입주율}) \times 12\text{월} = 81$ ▪ 표준공장(경공업동) : $3565\text{m}^2/\text{월}(\text{예상}) \times 27,907\text{m}^2 \times 1.0(\text{예상입주율}) \times 12\text{월} = 1,194$ ▪ 표준공장(중공업동) : $2580\text{m}^2/\text{월}(\text{예상}) \times 8,319\text{m}^2 \times 1.0(\text{예상입주율}) \times 12\text{월} = 257$ ○ 군산자유무역지역 : 59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사동 : $2,174,680\text{원}(\text{월금액}) \times 12\text{월} \times 1.1(\text{증감율}) = 29\text{백만원}$ ▪ 업무지원동 : $7,976,280\text{원}(\text{월금액}) \times 12\text{월} \times 1.1(\text{증감율}) = 105\text{백만원}$ ▪ 물류동 : $12,238,190\text{원}(\text{월금액}) \times 12\text{월} = 147\text{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공장 A타입 5개동: 17,096,310원(월금액)×12월×1.1(증감율)=226백만원 표준공장 B타입 2개동 : 7,399,050원(월금액)×12월×2개동=89백만원 <p>○ 김제자유무역지역 : 8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360원(㎡당 임대료) × 20,000㎡ × 12월=86백만원
‘17년	5,188	<p>○ 대불자유무역지역 : 102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공장(면적: 5,691.01㎡) : 47,290천원 청사동 및 업무지원동(면적:1,396.95㎡) : 54,527천원 <p>○ 동해자유무역지역 : 104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공장 1동 384원(㎡당평균단가)×4,162㎡(임대예상면적)×12월=19백만원 표준공장 2동 325원(㎡당평균단가)×6,863㎡(임대예상면적)×12월=26백만원 표준공장 3동 344원(㎡당 평균단가)×12,207㎡(임대예상면적)×12월 = 50백만원 청사동 지원시설 1,909원(㎡당)×401㎡(임대예상면적)×12월 = 9백만원 <p>○ 마산자유무역지역 : 2,693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3호동 : 43,430.18㎡ × 876(평균임대료) × 12 = 456백만원 표준8호동 : 17,230.33㎡ × 1,049(평균임대료) × 12 = 216백만원 표준9호동 : 17,021.95㎡ × 1,049(평균임대료) × 12 = 214백만원 신축5개동 : 121,364㎡ × 1,049(평균임대료) × 12 = 1,527백만원 * '13년 임대료 공고기준 8.9호동 평균임대료 공공 건물 : 280백만원 (나눔관, 공공건물내 지원업체) <p>○ 울산자유무역지역 : 1,532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사동 : 5080㎡/월(예상) * 1342.57㎡ * 1.0(예상입주율) * 12월 = 81 표준공장(경공업동) : 3665㎡/월(예상) * 27,907㎡ * 1.0(예상입주율) * 12월 = 1,194 표준공장(중공업동) : 2580㎡/월(예상) * 8,319㎡ * 1.0(예상입주율) * 12월 = 257 <p>○ 군산자유무역지역 : 595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사동 : 2,174,680원(월금액)×12월×1.1(증감율)=29백만원 업무지원동 : 7,976,280원(월금액)×12월×1.1(증감율)=105백만원 물류동 : 12,238,190원(월금액)×12월=147백만원 표준공장 A타입 5개동: 17,096,310원(월금액)×12월×1.1(증감율)=226백만원 표준공장 B타입 2개동 : 7,399,050원(월금액)×12월×2개동=89백만원 <p>○ 김제자유무역지역 : 16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540원(㎡당 임대료) × 25,000㎡ × 12월=162백만원
‘18년	5,188	○ 상동

○ 금년도 및 중기계확상 특이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세외수입 및 자체수입 증대방안 : 해당사항 없음

기타재산수입(일반회계)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예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 기타재산수입	19,635	19,634	21,896	2,262	11.5

□ 세입개요

○ 세입 내용

- 출연금 및 보조금사업 등의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 이동통신기지국 운영수수료

○ 법적 근거

- 국고금관리법 제7조 및 제14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 국유재산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 세입실적

○ 연도별 세입실적

(백만원, %)

구분	'09		'10		'11		'12		'13		연평균증가율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 기타재산수입	9,224	9,626	10,161	5,888	20,161	7,967	19,152	27,631	19,635	16,165	20.8	13.8
(전년대비증가율)	-	-	10.2	△38.8	98.4	35.3	△5	24.7	2.5	△41.5		

□ 예산내역

○ 징수전망 및 산출근거

(백만원, %)

구분	금 액	산 출 근 거
‘14년	19,6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및 출연금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81,103\text{백만원} \times 0.47\% = 9,684\text{백만원}$ ⇒ ‘13년 출연금 예산액 $\times$ 최근 4년(‘09~12) 이자(가중)평균반납율 ○ RCMS(실시간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이자 : 9,600백만원 ○ 국가기술표준원 사업비 정산이자 등 350백만원
‘15년	21,8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보조금 발생이자: 12,139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년 출연·보조금 예산액 $\times$ 최근5년(‘09~13) 이자 가중평균반납률 = $2,247,910\text{백만원} \times 0.54\% = 12,139\text{백만원}$ ○ RCMS(실시간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9,600백만원 ○ 국가기술표준원 사업비 정산이자 등 157백만원
‘16년	19,6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및 출연금 발생이자: 약 9,685백만원 ○ RCMS(실시간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이자 : 9,600백만원 ○ 국가기술표준원 사업비 정산이자 등 350백만원
‘17년	19,635	○ 상동
‘18년	19,635	○ 상동

○ 금년도 및 중기계 확장 특이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세외수입 및 자체수입 증대방안 : 해당사항 없음

기타경상이전수입(일반회계)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예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 기타경상이전수입	65,399	205,623	164,081	△41,542	△20.2

□ 세입개요

- 세입 내용
 - 보조금 및 출연금 사업비 정산 잔액
 - 재산수입과 토지매각대금에 대한 연체료
- 법적 근거
 - 국고금관리법 제7조 및 제14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 세입실적

- 연도별 세입실적

(백만원, %)

구분	'09		'10		'11		'12		'13		연평균증가율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 기타경상이전수입	47,060	36,790	60,557	39,486	60,557	87,522	60,557	99,835	65,399	121,592	8.6	34.8
(전년대비증가율)	-	-	28.7	7.3	-	121.7	-	14.1	8	21.8		

□ 예산내역

○ 징수전망 및 산출근거

(백만원, %)

구분	금 액	산 출 근 거												
'14년	205,623	<div>○ 출연금 및 보조금 정산금(환수금) : 64,644백만원<ul style="list-style-type: none">▪ '13년 출연·보조금 예산액×최근4년('09~'12) 출연금 가중평균반납율</div> <div>○ 기술료 수입: 140,314</div> <div>○ 기술표준원 정산액 : 350백만원</div> <div>○ 군산자유무역지역 : 311백만원<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매각대금 연체료 : 311백만원</div> <div>○ 마산자유무역지역 : 연체료 등 4백만원<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료(2,590백만원)×1%(국유재산법 요율)×10%(추정비율)▪ 공동부담금(414백만원) ×3%(국세징수법 요율)×10%(추정비율)</div>												
'15년	164,081	<div>○ 출연·보조금 정산금: 155,521백만원<ul style="list-style-type: none">▪ '14년 출연·보조금 예산액 x 최근5년('09~'13) 출연금 가중평균반납률</div> <div>○ 국가기술표준원 정산액: 408백만원</div> <div>○ 자유무역지역 공동부담금 연체료: 6백만원</div> <div>○ 기타: '08-'09년 산업출연연 초과인건비 반납: 8,146백만원</div> <table><tr><td>'12년</td><td>'13년</td><td>'14년</td><td>'15년</td><td>'16년</td><td>합 계</td></tr><tr><td>2,798</td><td>3,608</td><td>6,674</td><td>8,146</td><td>7,386</td><td>28,612</td></tr></table>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합 계	2,798	3,608	6,674	8,146	7,386	28,612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합 계									
2,798	3,608	6,674	8,146	7,386	28,612									
'16년	305,623	-												
'17년	305,713	-												
'18년	305,713	-												

○ 금년도 및 중기계 획상 특이사항 : '15년부터 기술료 항목이 제외

□ 세외수입 및 자체수입 증대방안 : 해당사항 없음

세 출

정책기획관 세출예산현황

(백만원, %)

사업명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일반회계>	4,706	4,178	4,010	△168	△4.0
○산업통상자원행정정보시스템구축	3,649	3,159	2,877	△282	△8.9
○변화관리능력개발	159	257	400	143	55.6
○국내외교육훈련	183	213	202	△11	△5.2
○사이버안전센터구축운영	715	549	531	△18	△3.3

산업통상자원행정정보시스템구축(계속, 정보화)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산업통상자원행정정보시스템구축	3,649	3,159	2,877	△282	△8.9

* 사업코드 : 21-11-0-110-116-7100-7131-501

* 담당자 : 정책기획관(성윤모), 정보관리담당관(김미애, 044-203-5550), 주무관(박혜영, 5559)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1 ~ 계속
총사업비	-
사업규모	-
지원조건	직접수행, 민간보조, 출연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사업목적

-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 실물경제정책업무지원, 정보보호 체계구축을 통하여 직원들의 행정·정책업무 수행 지원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 :

('14)1,677 → ('15요구)1,253백만원(424백만원 감액)

- ①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 ('14)857 → ('15요구)657백만원
 - 업무포털 기능개선 : 175백만원
 - (필요성) 업무포털 데이터베이스 이중화 및 사용 편의성 제고,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등 기능개선 추진

⇒ 유형1(구축), 유형2(시스템 개발), 비목(연구개발비)

공정구분	기능점수	단가	기능점수	보정계수				개발원가
				규모	유형	품질	언어	
분석	94,511		297.9	0.650	1.11	1.05	-	21,329,393
설계	119,382		297.9				-	26,942,320
구현	159,177		297.9				1.51	54,244,211
시험	124,357		297.9				1.51	42,378,280
개발금액 = (개발원가 + 이윤(개발원가의 10%)) × 1.1(VAT)								175,321,987

- 홈페이지 등 대국민서비스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 178백만원
(필요성) 우리부 본부 및 소속기관 홈페이지 및 사이버홍보관 등 대국민서비스 정보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 및 기능개선

⇒ 유형1(구축), 유형2(시스템 개발), 비목(연구개발비)

공정구분	기능점수	단가	기능점수	보정계수				개발원가
				규모	유형	품질	언어	
분석	94,511		298.5	0.650	1.22	1.05	-	23,490,333
설계	119,382		298.5				-	29,671,922
구현	159,177		298.5				1.34	53,014,166
시험	124,357		298.5				1.34	41,417,307
개발금액 = (개발원가 + 이윤(개발원가의 10%)) × 1.1(VAT)								178,588,411

- 성과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 80백만원
(필요성) 사용자 편의성 및 활용도 증진을 위해 프로그램 소스와 솔루션의 현행·최신화 등 기능개선 필요

⇒ 유형1(구축), 유형2(시스템 개발), 비목(연구개발비)

공정구분	기능점수	단가	기능점수	보정계수				개발원가
				규모	유형	품질	언어	
분석	94,511		131.4	0.650	1.09	1.100	-	9,678,549
설계	119,382		131.4				-	12,225,504
구현	159,177		131.4				1.53	24,940,184
시험	124,357		131.4				1.53	19,484,514
개발금액 = (개발원가 + 이윤(개발원가의 10%)) × 1.1(VAT)								80,257,789

- 메신저 기능개선 : 35백만원
(필요성) 개인PC에 저장되었던 첨부파일 및 메시지를 중앙서버 저장방식으로 변경하여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업무환경 구현

⇒ 유형1(구축), 유형2(시스템 개발), 비목(연구개발비)

공정구분	기능점수	단가	기능점수	보정계수				개발원가
				규모	유형	품질	언어	
분석	94,511		43.6	0.650	1.20	1.150	-	3,696,250
설계	119,382		43.6				-	4,668,935
구현	159,177		43.6				1.90	11,828,042
시험	124,357		43.6				1.90	9,240,655
개발금액 = (개발원가 + 이윤(개발원가의 10%)) × 1.1(VAT)								35,614,997

- 업무연락방 기능개선 : 25백만원

(필요성) 산하기관과의 협업 활성화를 위해 업무연락방 기능개선 추진

⇒ 유형1(구축), 유형2(시스템 개발), 비목(연구개발비)

공정구분	기능점수	단가	기능점수	보정계수				개발원가
				규모	유형	품질	언어	
분석	94,511		47.9	0.650	1.03	1.025	-	3,106,650
설계	119,382		47.9				-	3,924,179
구현	159,177		47.9				1.51	7,900,730
시험	124,357		47.9				1.51	6,172,444
개발금액 = (개발원가 + 이윤(개발원가의 10%)) × 1.1(VAT)								25,535,843

- 표준문서분류체계 적용(문서중앙화시스템) : 120백만원

(필요성) 부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업무관련 문서를 직원 간 공유·협업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표준화 필요

⇒ 유형1(구축), 유형2(시스템 개발), 비목(연구개발비)

공정구분	기능점수	단가	기능점수	보정계수				개발원가
				규모	유형	품질	언어	
분석	94,511		256	0.65	1.05	1.025	-	16,925,786
설계	119,382		256				-	21,379,884
구현	159,177		256				1.2	34,208,029
시험	124,357		256				1.2	26,725,016
개발금액=(개발원가+이윤(개발원가의10%))×1.1(VAT)								120,000,000

- 전자팩스 기능개선 : 13백만원

(필요성) 전자팩스 이용활성화를 위해 업무포탈, 조직도 연계 등 전자팩스 기능개선 추진

⇒ 유형1(구축), 유형2(시스템 개발), 비목(연구개발비)

공정구분	기능점수	단가	기능점수	보정계수				개발원가
				규모	유형	품질	언어	
분석	94,511		27.8	0.650	1.00	1.050	-	1,793,204
설계	119,382		27.8				-	2,265,094
구현	159,177		27.8				1.33	4,016,793
시험	124,357		27.8				1.33	3,138,118
개발금액 = (개발원가 + 이윤(개발원가의 10%)) × 1.1(VAT)								13,567,983

- 부내 영상회의 시스템 기능개선 : 31백만원

(필요성) '14년부터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산하기관과의 협업 활성화를 위해 부내 영상회의시스템(512호, 556호) 기능개선 추진

⇒ 유형1(구축), 유형2(시스템 개발), 비목(자산취득비)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라이선스 (우리부-3개 산하기관 연결)	1	4,400,000	4,400,000
VPN 장비	1	26,000,000	26,000,000
설치(식)	1	600,000	600,000
합 계			31,000,000

②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14)776 → ('15요구)576백만원

- 행정정보시스템 운영비(부내 행정정보시스템 40개, 대국민서비스 정보시스템 16개 운영, HELP DESK 운영, 네트워크 운영, 시스템 관리 등) : 434백만원

⇒ 유형1(운영 및 유지보수), 유형2(운영 및 유지보수), 비목(연구개발비)

업무활동		등급별 투입공수(MM)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투입 인력		0	0	13	20.25	24
노임단가		391,473	349,279	254,917	207,710	172,789
인건비				71,249,302	90,431,741	89,159,124
월평균일수		21.5				
직접인건비합계		250,840,167				
제경비	직접인건비 ×50%	125,420,083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 ×5%	18,813,013				
운영비		395,073,263				
총 운영비(VAT포함)		434,580,589				

- HW 및 상용SW 유지보수 : 105백만원

⇒ 유형1(운영 및 유지보수), 유형2(운영 및 유지보수), 비목(연구개발비)

업무명	도입비	유지보수비
(HW) 정보보안장비, 메신저 서버 등 102식	1,193,199,998	59,660,000
(SW) 자료전송, 통합검색 등 29식	906,800,000	45,340,000
합 계		105,000,000

- 노후 온나라 서버교체(통합전산센터)에 따른 상용SW
이전설치(DB이관) : 37백만원

⇒ 유형1(운영 및 유지보수), 유형2(운영 및 유지보수), 비목(자산취득비)

품명	수량	단가	금액
acube	1	25,000,000	25,000,000
magicline MD	1	4,000,000	4,000,000
WSS	1	8,000,000	8,000,000
합 계			37,000,000

③ 디지털도서관시스템 유지보수 : ('14)44 → ('15요구)20백만원
(필요성)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통해 디지털도서관 환경의 최적화 유지

⇒ 유형1(운영 및 유지보수), 유형2(운영 및 유지보수), 비목(연구개발비)

항목	수량	공급단가	공급금액
· 도서관리운영시스템 · 전자도서관 시스템 · RFID운영시스템(추가) · 국내 학술지 목차정보서비스(추가) · 메타 검색프로그램(추가)	1	20,000,000	20,000,000
합 계			20,000,000

○ 실물경제 정책업무 정보화 지원 :

('14)1,156→ ('15요구)1,240백만원 (84백만원 증액)

① 재정집행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 ('14)256백만원 → ('15요구)219백만원
(필요성)

- 산업부 출연/민간보조금 실집행기관의 재정집행 데이터를 자동 연계하여 CLEAN시스템에 집계함으로써 재원의 통합관리 실현
- 기재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의 직접적인 연계운동을 통해 국가 재정관리 표준화 선도

- 응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169백만원

⇒ 유형1(운영 및 유지보수), 유형2(운영 및 유지보수), 비목(출연금)

구 분	내 역	금 액
응용프로그램 (SW)유지 보수비	고정비 : 85백만원(초급기술자 1명, 제경비 60%, 기술료 10%, 부가세 10%) 변동비 : 35백만원(기능점수 131점) 직접경비 : 3백만원 ※ 고정비 및 변동비 산정에 의한 방식으로 계산	123,000,000
DB 구축비	소요공수 5개월, 인건비 26백만원, 제경비 60% 15.5백만원, 부가세 10% 4.5백만원	46,000,000
합 계		169,000,000

- 하드웨어 및 패키지소프트웨어 유지보수 : 46백만원

⇒ 유형1(운영 및 유지보수), 유형2(운영 및 유지보수), 비목(출연금)

장비명	도입비	유지보수비
Sun M5000 등 서버 2식 SecuwayGate100B 보안장비 1식	358,267,500	25,029,725
Tibero Enterprise 등 솔루션 11식	259,500,000	19,480,000
기관연계용 보안장비(VPN) 12식	36,000,000	2,880,000
합 계		47,389,725

- CLEAN시스템 공동운영기관 협의체 운영 : 4백만원

⇒ 유형1(운영 및 유지보수), 유형2(운영 및 유지보수), 비목(출연금)

- 업무관련 회의 : 20천원×10명×20회 = 4백만원

② 원자재상시경보통제시스템(WACS) 운영 유지보수

: ('14)100→ ('15요구)100백만원

(필요성) 급변하는 원자재 시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품목에 대한 경보시스템 등을 운용하여, 시장 변화에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적인 정책 반영에 필요함

⇒ 유형1(운영 및 유지보수), 유형2(운영 및 유지보수), 비목(연구개발비)

항 목			수량	공급단가	공급금액
모니터링 시스템	홈페이지	가격정보	1	8,000,000	8,000,000
	업무포탈	가격정보	1	10,000,000	10,000,000
		뉴스분석정보	1	22,000,000	22,000,000
	유지보수		1	7,000,000	7,000,000
상시경보시스템 운용데이터 및 유지보수			1	28,000,000	28,000,000
산업원자재지수 운용데이터 및 유지보수			1	12,000,000	12,000,000
서버장비 외 기타			1	13,000,000	13,000,000
합 계					100,000,000

③ 광업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 ('14)65 → ('15요구)186백만원 (필요성)

- '13.10월 오픈한 온라인 민원발급시스템*은 IE(인터넷 익스플로어) 8버전에 최적화되어 개발되고 웹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 IE 기타 버전 및 타 브라우저로 접근 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

-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제4조2항)」은 상이한 3종 이상의 웹 브라우저에서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 ◆ 인권위('13.12월)는 익스플로어를 통해서만 민원신청이 가능한 고용부 홈페이지에 대하여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음

- 웹 표준화, 호환성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 개선과 기능 강화로, 오류 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 '11년 개발·구축되었으나 보안성 문제로 오픈이 지연, '13.10월 서비스 개시
- 광업권 통합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관련 업무 지원, 온라인 민원발급서비스 이용 민원에 대한 신속한 응대를 위해 중급 이상 기술자의 상주가 반드시 필요함.

※ 온라인 민원발급시스템 오픈('13.10월)으로 발급민원의 80%를 온라인으로 처리, 방문민원의 83%가 감소('13.1분기 12,206건→'14.1분기 2,024건)

⇒ 유형1(운영및유지보수), 유형2(운영및유지보수), 비목(연구개발비)

구분	내역	금액
응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비	○ 직접인건비(초급 상주), 제경비, 기술료, 부가세 ○ 수행내용 : 헬프데스크 운영, 시스템 상시점검, 기능개선, 품질개선, 소스·산출물 관리 등	128,000,000
상용SW 유지보수비	○ 정보자원명 : DBMS Altibase5, 웹보안 Xecure Web, 리포팅툴 report designer5, 그리드툴 Wise Grid, 민원발급솔루션 e-PageSafer2.5	14,000,000
시스템개선비	○ 개선내용 : 웹 표준화 및 브라우저 호환성 제고	44,000,000
합 계		186,000,000

④ 신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운영/유지보수) : ('14)35 → ('15요구)35백만원

(필요성) OECD에 '14년 12월부터 BD4 기준에 부합하는 FDI 통계 제출 예정되어 있는 바, 이에 대응하고, 외국인투자기업 활동 상황의 체계적 관리 및 관련 현황의 효율적인 파악 도모(매년 말 정기 제출)

- 기능보완(설문 변경내용 시스템 반영) : 25백만원

⇒ 유형1(운영 및 유지보수), 유형2(운영 및 유지보수), 비목(민간경상보조)

단계	단계별 단가	총 기능점수	보정계수				개 발원가
			규모	형태	품질	언어	
분석	94,511	65.3	0.67423	1	1.05	-	4,369,117
설계	129,382					-	5,981,156
구현	159,177					0.8	5,886,831
시험	125,357					0.8	4,636,069
개 발금액 = (개 발원가 + 이윤(개 발원가의 10%)) × 1.1(VAT)							25,256,539
(십만단위 절사)							25,000,000

- 시스템 운영·유지보수 : 10백만원

⇒ 유형1(운영 및 유지보수), 유형2(운영 및 유지보수), 비목(민간경상보조)

장비명	도입비	유지보수비
Web서버 등 서버 3식	128,700,000	6,435,000
WebtoB 등 SW 4식	68,310,000	4,098,600
합 계		10,533,600
(십만단위 절사)		10,000,000

- ⑤ 무역구제업무 정보화 구축사업 : ('14)200 → ('15)200백만원
 (필요성) 무역위원회 무역구제 조사자료는 대부분 책자, 문서 등으로 보관하고 있어 자료의 유실 위험과 정보공개의 어려움
 ⇒ 유형1(구축), 유형2(시스템개발), 비목(연구개발비)

구분		소요공수(MD)	금 액
인건비	반덤핑(105건)	1,024 MD	65,000,000
	세이프가드(33건)	106 MD	8,000,000
	불공정 무역조사(272건)	1,503 MD	98,000,000
직접비	인쇄비, 여비, 회의비 등		9,000,000
합계			180,000,000

⇒ 유형1(구축), 유형2(시스템개발), 비목(자산취득비)

품명	수량	단가	금액
저장장치(HDD:1TB)	1	20,000,000	20,000,000

- ⑥ 통상회의관리시스템 구축 : ('14)500백만원 → ('15)500백만원
 (필요성)

- '14년도에 구축한 통상정보자료관리시스템에 대한 고가용성을 높여 장애발생시 업무서비스의 중단을 최소화하여 중요업무에 대한 안정적인 업무 운영이 가능토록 구성하여 지속적인 서비스 필요
- SPoF(단일접점장애포인트) 제거를 통한 안정적 인프라 환경마련 필요
- 국정원 보안기준에 부합하는 중요문서(대외비 이상) 유통 보안대책마련
- 비전자 문서 송, 수신 시 발생하는 시간지연 해소

- 이중화구성 웹/지원 서버 및 S/W : 274.5백만원

⇒ 유형1(구축), 유형2(장비도입), 비목(자산취득비)

항목	내역	금액
서버	DB서버 1식 쿼드코아 2GHz 이상 Memory 32GB 이상	50백만원
	APP서버 1식 쿼드코아 2GHz 이상, Memory 32GB 이상	50백만원
암호화모듈	국가암호이용기반 시스템 기준 1식	34.5백만원
S/W	·웹서버 S/W 1식(JVM-JDK지원)	10백만원
	·WAS 1식(상용 WAS와 연동)	40백만원
	·DBMS(표준 SQL지원 등)	50백만원
	·백업S/W 1식(NT와 UNIX디바이스 공유)	40백만원

- 통상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14) 0원 → ('15요구) 225.5백만원

· 운영비(웹서버, 국가용보안장비 등 69식) : 133백만원

⇒ 유형1(운영 및 유지보수), 유형2(운영 및 유지보수), 비목(연구개발비),

업무활동		등급별 투입공수(MM)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중급기술자
투입 인력		8	16	8
노임단가		266,590	219,469	219,469
직접 인건비		46,919,840	84,978,397	42,489,198
월평균일수		21.5		
제 경비	직접인건비×110%	50,438,828	83,047,070	41,523,535
기술료	[직접인건비+제 경비]×20%	19,258,462	31,708,881	15,854,441
운영비 (*)1/9적용		12,838,974*	21,139,254*	95,126,643
계		129,104,872		
총 운영비*(VAT포함)		133,015,359		

· HW 및 상용SW 유지보수 : 92.5백만원

⇒ 유형1(운영 및 유지보수), 유형2(운영 및 유지보수), 비목(연구개발비)

업 무 명	도입비	유지보수비
(HW) 서버, SBC 서버, 스토리지, 스위치 등 31식	799,597,000	55,971,790
(SW) 웹서버, DBMS, SBC 서버 등 38식	522,011,840	36,540,828
합 계		92,512,619

○ 정보보호체계 구축 :

('14)326 → ('15요구)384백만원(58백만원 증액)

① 정보보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14)222 → ('15요구)280백만원

(필요성) 다양한 보안솔루션(방화벽, 침입탐지, 개인정보보호 암호화, 내부IP관리 등)을 실시간으로 통합·분석하여 사이버 침해사고시 효과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

⇒ 유형1(구축), 유형2(장비 도입), 비목(자산취득비)

항목	내역	금액
트래픽분석장비	2EA(업무망, 외부망)×92백만원	184백만원
스토리지	4EA(업무망, 외부망)×13백만원	52백만원
승인시스템	2EA×22백만원	44백만원
합 계		280백만원

② 백신·정보보호 프로그램 구입 : ('14)104 → ('15요구)52백만원
(필요성) 부내 PC 및 정보시스템 서버 보호용 보안프로그램 구입 및 License 유지

⇒ 유형1(구축), 유형2(장비 도입), 비목(자산취득비)

항목	내역	금액
백신	2050EA(PC)×2.1만원(V3)	43백만원
	29EA(서버)×32만원(V3)	9백만원

③ 개인정보 오·남용 점검시스템 구축: ('14)0 → ('15요구)52백만원
(필요성) 개인정보처리자가 고객 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유형1(구축), 유형2(장비 도입), 비목(자산취득비)

항목	내역	금액
서버	1EA×22백만원	22백만원
개인정보 종합관리 소프트웨어	1EA×30백만원	30백만원
합 계		52백만원

□ 지원 필요성

-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
 - 업무포털 등 부내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과 기능 고도화를 통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의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
 -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대국민서비스 제고
- 실물경제 정책업무 정보화 지원
 - CLEAN 시스템, 광업정보시스템 등 정책업무 수행에 활용되는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능 고도화
- 정보보호체계 구축
 - 다양한 보안솔루션(방화벽, 침입탐지, 개인정보보호 암호화, 내부IP관리 등)을 실시간으로 통합·분석하여 사이버 침해사고시 효과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산업통상자원행정정보시스템구축	3,649	3,159	2,877	△282	△8.9
▪ 시스템고도화 및 유지보수	1,681	1,677	1,253	△424	△25.3
▪ 실물경제 정책업무 정보화지원	1,446	1,156	1,240	84	7.3
▪ 정보보호체계 구축	522	326	384	58	17.8
☐ 비목	3,649	3,159	2,877	△282	△8.9
▪ 연구개발비(260-00)	2,295	2,061	1,877	△184	△8.9
▪ 민간경상보조(320-01)	-	35	35	-	-
▪ 출연금(350-01)	400	256	219	△37	△14.4
▪ 자산취득비(430-01)	954	807	746	△61	△7.5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의 원활한 행정·정책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기능고도화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3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16.8) ▪ 실물경제 정책업무 정보화지원 (11.5) ▪ 정보보호체계 구축(3.3)
'15	2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12.5) ▪ 실물경제 정책업무 정보화지원 (12.4) ▪ 정보보호체계 구축(3.8)
'16	2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13.7) ▪ 실물경제 정책업무 정보화지원 (11.5) ▪ 정보보호체계 구축(4.0)
'17	2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13.7) ▪ 실물경제 정책업무 정보화지원 (11.9) ▪ 정보보호체계 구축(4.0)
'18	2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13.7) ▪ 실물경제 정책업무 정보화지원 (11.5) ▪ 정보보호체계 구축(4.0)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전자정부법 제30조, 52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1조, 제24조, 제29조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 16조
 -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 추진경위
 - 'e-산자부' 선언 ('00)
 - 산자부 중장기정보화추진전략 수립 ('01)
 - 산업자원 지식행정체제 확대 중장기정보화추진계획 수립 ('03)
 - 산업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 ('05)
 - 산업자원 데이터웨어하우스 정보전략계획 수립 ('06)
 - 산업자원부 정보기술아키텍처적용 기본계획 수립 ('07)
 - 지식경제부 정보화전략 수립 ('08)
 - 중장기 정보화계획 수립 ('12)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산업통상지원 행정정보시스템구축	35	33	33	32	29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1년 이월(53백만원) : '정보화사업통합감리', '사이버홍보관활성화' 사업기간 미종료로 이월 발생
- '12년 이월(125백만원) : '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시스템', '통합성과관리 시스템', '멀티미디어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UX', 'MI' 사업기간 미종료로 이월 발생

- '13년 이월(405백만원) : 통상정보자료관리시스템구축사업, 업무자료 분류체계 자동화프로그램개발 사업 등이 보안시스템 업무협의 및 공개경쟁절차 준수로 사업기간 미종료로 이월 발생
- '13년 불용(105백만원) : 예산절감액 및 '13년 지식경제행정정보시스템고도화 및 통합유지보수사업 등 낙찰차액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35	0.79	0	36	35	0.53	0.01
	()	()	()	()	()	()	()
'12년	33	0.53	0	33	32	1.25	0.01
	()	()	()	()	()	()	()
'13년	33	1.25	7.97	42	36	4.05	1.43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산업위) '12년 결산 검토보고서 지적사항
 - 사업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경쟁방식으로 집행할 필요
- 2012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최근 평가년도	평가등급	평가점수	평가기관	비고
2013년	보통	70.0	기획재정부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 해당없음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없음

변화관리능력개발(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변화관리 능력개발	159	257	400	143	55.6

* 사업코드 : 21 - 11 - 00 - 110 - 116 - 7100 - 7132 - 303

* 담당자 : 정책기획관(성윤모), 창조행정담당관(박상희, 044-203-5530), 주무관(최진경, 044-203-5536)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5~계속
총사업비	-
사업규모	-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2. 사업목적

- 산업통상자원부 및 협력기관의 변화관리역량 강화와 산업·통상·자원 분야 변화관리과제추진 및 변화관리능력 개발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에 적합한 프로그램 운영
- 변화관리 교육-학습-연구체계 구축으로 변화-쇄신의 체질화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창조적 조직 문화 정착
- 유관기관 역량 강화를 통한 안정적 공공서비스 제공 및 성과 향상을 위해 유관기관 임·직원에게 대한 평가 및 교육 필요
-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선제적 갈등대응시스템을 확립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변화관리 및 혁신교육 : 1.1억원

- 즐겁고 활력 있게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사업: 5,150만원
 - 자기개발 프로그램 운영(리더십, 대인관계, 문화, 건강 강좌 등)
 - * 자기개발 강좌 2,400만원 = 200만원×12회
 - * 선배에게 듣는 생활의 지혜 550만원 = 55만원×10회
 - * 저자와의 만남 1200만원 = 200만원×6회
 - 각계 저명인사 초청 수직원 대상 교양 강연회 개최
 - * 1,000만원 = 150만원 × 6회 + 소모품준비 100만원
- 창의적인 정책생산을 위한 여건 조성사업: 4,460만원
 - 직원들의 자발적 연구모임 지원 : 820만원
 - * 연구모임 지원 540만원 = 15만원 x 9개 x 4회
 - * 우수연구모임 포상 100만원 = 1등 50만원, 2등 30만원, 3등 20만원
 - * 학습동아리 180만원 = 운영 교재 등 지원 3개 x 4회 x 15만원
 - 부내 크로스미팅 지원 : 540만원
 - * 540만원 = 30만원 x 3팀 6회
 - 국내외 변화관리 모범 기관·기업 등 연수 : 2,200만원
 -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 900만원
 - * 900만원 = (위원회 참석수당 600만원(20만원×30명)+장소임대료 및 회의준비 등 300만원)
-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포상 : 1,000만원
 - 분기별 우수부서 : 880만원
 - * 880만원 = 55만원 x 4개부서 x 4회

- 올해의 산업통상자원인 : 120만원
 - * 포상금 : 100만원 = 30만원 x 2명 + 20만원 x 2명
 - * 상패제작 : 10만원 x 2명
- 변화관리 우수부서·우수자 포상 등 : 390만원
 - 개인 및 부서 우수자 포상 : 90만원
 - 정부 3.0, 공공기관 등 관련 회의 개최 지원 : 300만원

② 유관기관 역량평가 과제개발 : 0.42억원

- 역량평가과제 개발 : 42백만원
 - * 평가과제 1개 set 개발비 21백만원 * 2개 Set = 42백만원
(set당 4개 세부평가과제로 구성)

③ 규제심사 및 갈등관리 지원 : 2.48억원

- 자체규제심사위원회 및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 5,600만원
 - 규제심사위원회(횟수 및 참석율은 '14년 기준) : 4,680만원
 - * (회의) 14명×15회×25만원×0.8(참석율) = 4,200만원
 - * (회의장 임차료) 30만원×16회 = 480만원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 920만원
 - * (회의) 10명×4회×25만원×0.8(참석율) = 800만원
 - * (회의장 임차료) 30만원×4회 = 120만원
- 규제개혁교육 및 갈등관리 교육 : 500만원
 - 규제 및 갈등관리 통합 교육 : 200만원
 - * 강사료 90만원, 인쇄비 30만원, 강의실 임차료 80만원
 -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브라운백 미팅 : 300만원
 - * 75만원(강사료 30만원 + 도시락구입비용 45만원) x 4회 = 300만원
- 입지, 창업 등 분야별 덩어리 규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 3,700만원
 - * 1,875만원 x 2개 분야 = 3,700만원
- 신설·강화 규제 비용·편익분석 연구용역 : 15,000만원
 - * 250만원 x 60건 = 15,000만원

□ 지원 필요성

- 변화관리 교육-학습-연구체계 구축으로 변화-쇄신의 체질화 유도 및 조직구성원들의 창의역량 강화, 즐거운 일터 분위기 조성
 - 세종시 이전에 따른 근무 여건 악화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사기 진작 프로그램 필요
-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정책 집행의 품질 제고를 위하여 유관기관 임·직원에게 대한 역량 강화 교육 필요
 - 공공기관은 에너지 수급이나 안전관리 업무 및 무역 지원 등을 수행하면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 일자리 창출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필요성 지속 제기
 - 규제로 인한 기업의 부담 총량을 일정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규제 비용총량제'* 도입 → 엄밀한 규제비용·편익 분석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분석 필요
 - * 신설·강화 규제 도입시 그 비용에 상응하는 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
 - 규제개선 과정에 국민·기업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규제개혁신문고' 운영 중 → 답변 내용 중 '소명'* 대상 과제는 부처 자체규제심사위원회에 상정·논의하도록 되어있어 개최횟수 확대 필요
 - * 부처의 중장기검토 및 불수용 답변 중 국조실에서 일부를 선정하여 소관 1급 명의로 소명 의무 부과
 - 규제개혁의 수요자인 기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별 적인 규제 개선 외에, 부처간에 연결된 규제를 개선할 필요 → 신산업분야 창업 등 분야별로 부처간 연결규제를 연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사업명					
▪ 변화관리 및 혁신교육	71	110	110	0	0
▪ 유관기관 역량강화	59	42	42	0	0
▪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지원	29	105	248	143	136
☐ 비목					
▪ 일반수용비(210-01)	101	84	77.6	-6.4	-7.6
▪ 임차료(210-07)	6	3	0.5	-2.5	-83
▪ 기타운영비(210-16)	13	18	20	2	11
▪ 국내여비(220-01)		5	5	0	0
▪ 국외여비(220-01)	15	17	17	0	0
▪ 사업추진비(240-01)	14	22	22	0	0
▪ 연구개발비(260-00)	-	92	245	153	166
▪ 포상금등(310-03)	10	16	12.9	-3.1	-19.3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항상 연구하고 변화에 도전하는 인재 양성
- 국민과 기업을 섬기는 산업통상자원부인의 상을 유지·발전시키고 끊임없는 창조적 혁신을 추구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2.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화관리 및 혁신교육 : 1.1 ▪ 유관기관 역량강화 : 0.42 ▪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 1.05
'15	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화관리 및 혁신교육 : 1.1 ▪ 유관기관 역량강화 : 0.42 ▪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 2.48
'16	3.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화관리 및 혁신교육 : 1.1 ▪ 유관기관 역량강화 : 0.42 ▪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 2
'17	3.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화관리 및 혁신교육 : 1.1 ▪ 유관기관 역량강화 : 0.42 ▪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 2.3
'18	3.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화관리 및 혁신교육 : 1.1 ▪ 유관기관 역량강화 : 0.42 ▪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 1.71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① 변화관리능력개발 및 유관기관 역량강화 제도 운영

- 변화관리 능력개발 : 대통령 지시사항 및 국무회의 의결사항
- 유관기관 역량강화 제도 운영 : 공공기관 상임이사 후보자의 역량평가에 대한 규정

②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지원

- 지원근거 : 행정규제기본법,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및 갈등관리 종합계획 수립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변화관리능력개발	2.2	1.5	2.1	2.6	4.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1년) 불용 : 대외 환경 변화로 인한 해외 출장 취소 등
- (2012년) 불용 : 기재부 불용지침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1.9	-	-0.1 +0.1	1.9	1.8	0.2	0.1
'12년	2.2	0.2	-	2.4	2.1	-	0.3
'13년	1.5	-	-	1.5	1.5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구분	주요업무	수행 주체
수행방향 설정	당해연도 수행방향 설정	산업부
▼		
계획 수립	당해연도 계획 수립	산업부
▼		
사업 수행	계획에 따라서 사업 수행	산업부
▼		
실적 관리	수행 결과를 변화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관리	산업부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참고1

규제비용총량제 개요

□ (개요) 비용 기준으로 규제신설시 상응하는 기존규제 폐지 (Cost-in, Cost-out) (비용원칙, 등급 예외 방식)

* 시행에 긴급을 요하거나 국민안전 등의 규제는 적용 예외

○ (비용 개념) 규제 신설·강화로 인해 기업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직접비용'*을 총량 관리 기준으로 운영 (간접비용 제외)

* (직접비용) 직업훈련비, 장비구입, 전문가 자문비 등 피규제자에게 직접 발생하는 비용 vs (간접비용) 생산성 하락, 소비자 선택폭 감소 등 직접적 화폐지출을 동반하지 않는 비용

- (규제비용 적립제) 추가 절감한 규제비용은 이를 적립, 향후 규제신설시 사용 가능토록 관리

- (등급제) 비용계산이 어렵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규제의 과급 효과 등을 감안한 '등급(rating)' 방식 적용 (3~5개 등급, 등급 간 교환)

○ (운영체계) 입법예고 전 총량제 적용 대상 여부를 국조실과 사전협의 하고 규제개혁위원회(전문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비용·등급 적정성 심사

- (전문위원회 및 규제비용분석기구) 규개위 산하에 전문위원회(위원장 규제 조정실장)를 설치·운영하고, 규제비용분석 독립기구를 통해 비용분석 검증

○ (실시계획) 주요 규제부처 및 자발적 참여부처는 '14.7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15년부터는 정부 전체 전면 실시

* 총 7개 부처: 우리부, 국토부, 환경부, 문체부, 농림부, 해수부, 중기청

□ (적용예외) 국제조약·협약, 위기대응, 생명·안전·질서유지, 요금·수수료·과태료와 관련된 규제는 총량제 적용 예외

□ 배경 및 필요성

- '15년부터 범정부적으로 '규제비용총량제'* 전면 실시 예정
 - * 신설·강화 규제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비용만큼의 기존규제 폐지(cost-in, cost-out)
 - 多數 신설·강화 규제가 총량제 적용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며, 적용 대상 신설규제 및 퇴출규제에 대해서는 엄밀한 비용·편익 분석 필요
 - * 총량제 적용 예외: 국제조약·협약, 위기 대응, 생명·안전·질서유지, 요금·수수료·과태료 관련 규제
- 기존의 규제영향분석과는 별도로 기업에 대한 규제비용·편익을 계량적으로 산출*해야 하는 바, 민간전문가를 통한 체계적 분석 필요
 - * 예외적으로 비용분석이 어려운 경우, 등급(3~5단계)을 산출하여 등급 간 교환

□ 규제비용·편익 분석 연구용역 방안

- (내용) 산업부에서 신설·강화하는 규제(월 평균 10건 内外) 및 그에 대응해서 퇴출시킬 규제가 기업에 초래하는 순 비용을 분석
 - * 각 분석 결과에 대해 관련 전문가 자문 실시
- (소요예산) 각 분석별 250만원 소요 가정할 때 연간 1.5억원 소요
 - * 250만원×60건(신설·강화규제 중 50%에 대해서 비용분석실시) = 1.5억원

참고3

분야별 덩어리규제 연구용역 추진계획(예시)

- (연구개요) 신기술산업 관련 규제 중 동일유형, 기업애로가 큰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기대효과를 산출
- (연구내용) 해외·국내 사례분석, 규제 유형화, 주요 규제법령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등을 단계적으로 수행

[세부연구 내용 및 수행방안(案)]

세부 연구 단계	연구 내용	수행방안
① 기술규제개선에 대한 주요국 사례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주요국의 기술 규제 개선에 대한 사례 분석 연구 • 해외 주요국의 기술 규제 개선 내용을 유형화하고 기본 원칙 분석 ※ 분야별·기업규모별 차별화, 사회적·경제적 비용편익 등 ※ 신기술 산업에 대해 명확한 규제가 없는 경우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방안, 규제의 유연성부여 방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규제개혁연구 분석 • 해외 규제완화법령 분석 • 대학 및 산업계 전문가 자문회의
② 규제 합리화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규제 등으로 제품화, 산업화가 지연되고 있는 국내외 사례 분석 • 해당 규제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 이를 토대로 규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 경제관련 언론사 등을 통한 기획연재 • 신기술 규제개혁에 대한 공청회, 토론회 개최

세부 연구 단계	연구 내용	수행방안
③ 산업적 차원에서 규제유형을 분류하고 개선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산업별 규제개선 수요 파악 • 산업별·부문별·규모별로 기존 기술규제를 유형화 • 산업별·부문별·규모별 기술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 <p>※산업별·부문별·규모별 또는 기술별로 사회적·경제적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규제개선 방안을 차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연구 및 규제개선 정책 분석 • 산업단체 등을 통한 의견수렴, 설문조사 등 • 대학 및 산업계 전문가 자문회의
④ 주요 법령 분석을 통해 기술규제 개선방안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 관련 법령분석을 통해 규제를 유형화 (창업·입지규제, 제조허가, 인증 등) • 산업별, 기업활동 단계별(기술개발, 제품생산, 판매·마케팅 등) 규제 완화 지도 작성 • 규제완화가 필요한 핵심규제를 선정 • 기존 법령으로 완화가 어려운 규제 선별(소관부처 중복, 제도 미비로 인한 과도한 규제사항 등 발굴) • 규제의 개선방안 마련과 기대효과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연구 및 규제개선 정책 분석 • 기술규제 법령 분석 • 대학 및 산업계 전문가 자문회의 • 개선방안에 대해 이해당사자 협의

참고4

규제개혁신문고 및 소명제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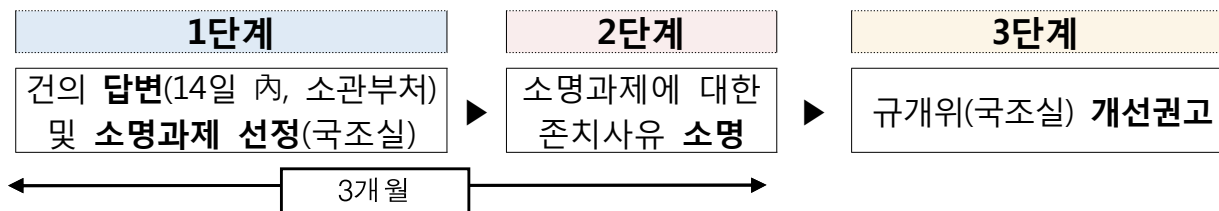
◆ 규제개혁신문고* 신설 후 VIP께서 해당 사이트를 매일 방문, 부처 답변 내용을 수시 확인 중

* 청와대 홈페이지 및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

※ (참고) 규제건의 처리상황은 VIP 및 총리 일일보고 中이며, BH 민정수석실에서도 모니터링 中

◆ 각 부처 규제신문고 답변 중 국조실이 소명 대상을 선정하면 자체 규제분석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1급 명의로 소명

< 규제신문고 건의처리 흐름도 >



○ (1단계) 국조실은 각 부처 규제신문고 답변*(중장기검토, 불수용) 중 부처의 전향적 검토가 미진하다고 판단한 과제에 대해서 소명 의무 부여

* 산업부 현황(5.12일 기준 답변완료 139건): (수용) 29건, (중장기) 52, (불수용) 58

- 5.12일 1차 소명 대상 과제를 선정해서 각 부처로 통보(우리부 20건/소부처 120건)

○ (2단계) 각 실·국에서는 자체 규제 분석*을 수행, 그 결과의 타당성을 자체규제심사위원회에서 심사받고 최종소명** (1급 명의)

* B/C 분석, 규제목적 달성도 및 외국사례 등 검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 규제존치, 규제개선, 대안제시 중 택1

※ (소명기한) 과제 최초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원칙

* 3.21일에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과제는 6.21일까지 소명 필요

○ (3단계) 소명 결과 규제존치 건의 중 일부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후 필요시 개선권고 실시(기관장은 권고 이행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

국내외 교육훈련(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국내외 교육훈련	183	213	202	△11	△5.16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6 - 7100 - 7137 - 402

* 담당자 : 운영지원과장(강경성), 인사팀장(남명우, 044-203-5060), 주무관(이민영, 5065)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3년~계속(조직개편으로 舊 외통부로부터 국내외 교육훈련비 일부 이체)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2. 사업목적

- 산업통상인력 양성을 위한 장기국외훈련비 지원
- 동 사업의 경우 정부조직개편('13.3.23)으로 舊 외통부로부터 국외 훈련생 및 훈련비를 이체 받은 바, 既 교육파견 중인 훈련생 및 신규훈련생 교육훈련비 지급
- 현 정부의 국정과제의 일환인 “FTA 네트워크 등 경제협력 역량 강화” 추진을 위해 통상전문인력 양성은 지속적 추진 및 확대 필요
 - * FTA 네트워크 구축(현재 49개국과 FTA 체결, 15개국과 협상 등)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국내외 교육훈련

- (계속지원) 既 국외 훈련생 지원 : 미국, 스페인, 영국 등에 훈련중인 3인에 대한 체재비, 학자금 등으로 **124백만원**

- 산출내역(환율 1달러=1,115원, 1유로=1.33불, 1파운드=1.57불)*

- * 2013년도 평균환율을 기준으로 작성

① A 사무관('15.5월까지 스페인 국외훈련) = 17,884,600원

- * 2,021유로*5개월(체재비+의료비)+2,000불(항공료)+600불(귀임료)= 16,040불 = 17,884,600원

② B, C사무관('15년도 미국 국외훈련) = 106,050,000원

- * 2,463불*12개월(체재비+의료비)+18,000불(학자금) = 47,556불 * 2명 = 106,050,000원

- (신규지원) '15년 신규훈련생 2인에 대한 체재비, 학자금, 항공료, 준비금 등으로 **73백만원**('15년 하반기 파견예정, 미국기준)

- * (2,463불*4개월(체재비+의료비)+2,000불(항공료)+18,000불(학자금)+500불(준비금))*2명= 65,470불 = 73,000,000원

구 분	'14예산	'15요구
	213백만원	202백만원
□국내외교육훈련	* (계속지원) 4명 * (신규지원) 2명	* (계속지원) 3명 * (신규지원) 2명

- (예비비) 환율변동 및 가족 항공료 **5백만원**

□ 지원 필요성

- 현 정부의 국정과제의 일환인 “FTA 네트워크 등 경제협력 역량 강화” 추진을 위해 통상전문인력 양성은 지속적 추진 및 확대 필요

- * FTA 네트워크 구축(현재 49개국과 FTA 체결, 15개국과 협상 등)

- 정부조직개편 후('13.3월) 산업부가 통상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상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

- 舊 외통부가 외교·통상인력양성을 위해 국외훈련과정을 운영한 점을 감안시, 정부조직개편으로 통상기능이 부여된 산업부도 양질의 통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외훈련 과정을 계속적으로 운영 필요
- 舊 외통부 국외훈련 과정에 선정되어 既 국외훈련중인 훈련생('14년 기준 3명)들을 위한 훈련비 당연 지원
- '15년도 신규 훈련인원 확대 필요 및 지속지원 필요(인사혁신처 협의중)
 - * 신규 T/O는 '14년도 기준으로 작성('14년도 말 인사혁신처 협의 완료 예정)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국내외 교육훈련	183	213	202		
☐ 비목	183	213	202		
▪ 국제화여비	131	127	120		
▪ 보상금	11	86	82		
▪ 포상금	90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양질의 통상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장기국외훈련 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
- 통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외훈련 T/O 확대를 위해 인사혁신처와 지속 협의
 - * 산업부는 인사혁신처에 '15년도 자체국외훈련 T/O중 통상전문가 양성을 위한 T/O 5명을 산업부로 배정해 줄 것을 요청('14년도 신규 2명, '15년도 신규 5명)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2.13	▪ 계속지원 1.35억원(4명), 신규지원 0.73억원(2명), 예비비 0.05억원
'15	2.02	▪ 계속지원 1.24억원(3명), 신규지원 0.73억원(2명), 예비비 0.05억원
'16	1.78	▪ 계속지원 1억원(4명), 신규지원 0.73억원(2명), 예비비 0.05억원
'17	1.92	▪ 계속지원 1.14억원(4명), 신규지원 0.73억원(2명), 예비비 0.05억원
'18	1.63	▪ 계속지원 0.9억원(4명), 신규지원 0.73억원(2명)

* 예비비 : 환율변동 및 동반가족준비금(항공료 등)을 준비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파견근무)①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국가적 사업의 공동 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에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공무원임용령 제41조(파견근무)①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4호. 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무원 교육훈련법,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공무원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

○ 추진경위

- 조직개편('13.3.23)으로 舊 외통부의 통상인력 양성을 위한 국외훈련 예산 이체(232백만원)
- '13년 기준 既 훈련생 6인, 신규 훈련생 1인, '14년 기준 既 훈련생 4인, 신규 훈련생 2인을 위한 국외훈련 과정 운영
- 현 정부의 국정과제의 일환인 “FTA 네트워크 등 경제협력 역량 강화” 추진 및 향후 지속적으로 양질의 산업통상인력 양성을 위해 인사혁신처와 국외연수 신규훈련생 TO확보를 위한 협의('13년~계속)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국내외 교육훈련	-	-	2.32	2.13	2.02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3년도 당초 계획대비 학자금, 어학연수비 등 지원 금액이 다소 줄어듬에 따른 불용 발생

* 지원상한액(USD18,000이내/1년)을 기준으로 예산을 수립하며 지출금액은 내역이 명확한 입학금, 등록금 등에 한해 실비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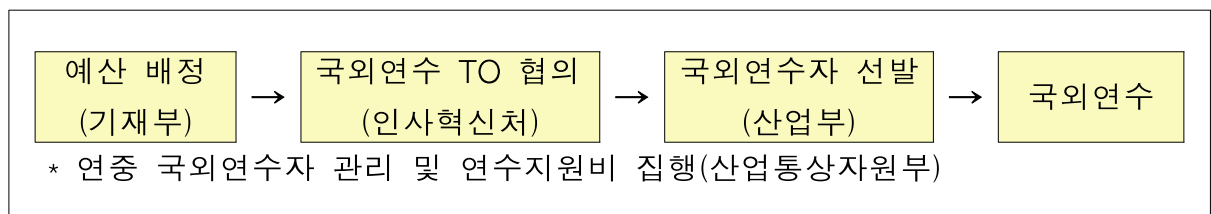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	()	()	()	()	()	()
'12년							
	()	()	()	()	()	()	()
'13년	232	0	0	232	183	0	49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없음

사이버안전센터구축운영(계속, 정보화)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715	549	531	△18	△3.3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6 - 7100 - 7142

* 담당자 : 정책기획관(성윤모), 정보관리담당관(김미애, 044-203-5550), 사무관(김용완, 5551)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8년 ~ 계속
총사업비	-
사업규모	-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정보관리담당관실

2. 사업목적

- 사이버공격이 지능화·정교화됨에 따라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최신 보안관제 솔루션 및 안정적인 운영환경 보장을 위한 노후설비 교체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사이버안전시스템 고도화 구축

- 다양한 정보보호설비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보안이벤트를 신속하게 수집·분석이 가능한 빅 데이터 보안관제시스템 구축
-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대상으로 악성코드 행위의 수집·분석을 위해 무선기기용 포렌직 분석도구 구축
- 에너지 등 공공기관 임직원의 보안체질 개선 및 보안수준 측정을 위한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지수 시스템 고도화

② 노후설비 교체

- 24시간 무중단 운영 및 보안관제업무의 연속성 보장을 위해 사용
년수가 일정기간 경과된 일부 노후설비 단계적 교체

< 세부 산출내역 (백만원) >

시스템	주요기능 및 규격	수량	금액
□ 대용량 이벤트 분석시스템	- 정보보호설비 보안이벤트 수집·분석	1	240
	- 대용량 이벤트 수집서버	2	22
□ 모바일기기 분석시스템	- 모바일기기 데이터 수집 및 분석	2	70
	- 모바일기기		
□ 정보보안 강화시스템 구축	- 사이버안전지수 시스템 고도화	1	84
	- 로그수집서버	5	15
□ 노후설비 교체	- 위협분석서버	4	60
	- 침입방지시스템	1	40
합 계			531

□ 지원 필요성

- '09년 7.7DDoS, '10년 스텝스넷, '11년 금융권 해킹사고, '12년 샤문
바이러스, '13년 3.20 및 6.25 사이버테러에 이어, '14년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 해킹기법은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추세임
- 진화하는 해킹기법에 신속·정확하게 방어하기 위해서는 최신
보안솔루션을 발굴하는 등 시스템 고도화 구축이 필수적이며,
- 보안관제업무를 연중 무중단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용년수가
도래한 노후설비를 교체하여 최적의 운영환경 유지 필요
- 또한, 최근 카드사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대란과 같은 보안사고
를 예방하기 위해 모니터링 강화 등 특단의 개선조치가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715	549	531	△18	△3.3
▪ 사이버안전시스템 고도화 구축	622	447	416		
▪ 노후설비 교체	93	102	115		
□ 비목	715	549	531	△18	△3.3
▪ 기타유형자산(430)	715	549	531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에너지·무역·산업 등 실물경제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산하 기관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이버안전을 확보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
 - 사이버전쟁(사이버 미사일)로 평가되기도 하는 사이버공격을 사전 탐지·방어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
- 최근 지능화·전문화되는 사이버공격으로부터 보안관제 효율을 극대화하고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시스템 고도화 구축
 - 365일 24시간 실시간 보안관제, 침해사고 대응, 취약점분석을 위한 최신 보안솔루션을 발굴·구축하여 사이버안전센터의 기능 강화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5.5	▪ 시스템 고도화 구축(4.5), 노후설비 교체(1.0)
'15	5.3	▪ 시스템 고도화 구축(4.2), 노후설비 교체(1.1)
'16	5.4	▪ 시스템 고도화 구축(4.2), 노후설비 교체(1.2)
'17	5.5	▪ 시스템 고도화 구축(4.3), 노후설비 교체(1.2)
'18	5.4	▪ 시스템 고도화 구축(4.2), 노후설비 교체(1.2)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6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
-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6조제1항** : 금융·통신 등 분야별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 **정보공유·분석센터를 구축·운용**할 수 있다.
-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2**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즉시 대응조치를 할 수 있는 기구(이하 “보안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13조(훈령 제59호)

○ 추진경위

- '06. 05월 :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의장 : 국가정보원장) 의결
- * 기존의 국방, 금융, 행정, 통신, 안보분야 외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5개 핵심 분야(에너지, 교통, 교육, 보건, 외교)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분야별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결정
- '07. 07월 : 산업자원분야 사이버안전센터 설립 계획수립
- '07. 12월 : 지식경제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정(훈령 제128호)
- '08. 08월 : 사이버안전시스템 구축 및 센터 개소(26개 기관)
- '10. 01월 : 지식경제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개정(훈령 제58호)
- '10. 01월 : 사이버안전서비스 대상기관 확대(14개 기관)
- '11. 01월 : 사이버안전서비스 대상기관 확대(7개 기관)
- '12. 02월 : 지식경제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개정(훈령 제91호)
- '12. 06월 : 사이버안전서비스 대상기관 확대(3개 기관)
- '13. 06월 : 정부 조직개편으로 미래부 이관(ETRI, 생기研, NIPA)
- '14. 12월 :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개정(훈령 제59호)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7	8	7.2	5.5	5.3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공개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불용 : '12년(6백만원), '13년(5백만원)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7			7	7		
	()	()	()	()	()	()	()
'12년	8			8	7.94		0.06
	()	()	()	()	()	()	()
'13년	7.2			7.2	7.15		0.05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3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 보통(76.0)
 - 평가시기 : 2013년 5월('10년 ~ '12년 사업결과)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외국사례
 - 미국 : 1)NERC에서 2)ES-ISAC 구축·운영
 - 미연방정보국 및 CIA의 사이버 위협정보 제공과 회원사 정보 시스템 보호

1) NERC(North American Electric Reliability Council): 1965년 정전상태이후 설립되어 전기시스템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정자 역할수행(美 전력ISAC 운영기관)

2) ES-ISAC(Energy-Sector Information Sharing & Analysis Center) : "에너지분야 정보공유분석센터" 에너지 분야 사이버안전관련 정보를 공유·분석하여 최상의 보안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분야별 센터

※ NERC는 1965년 정전사태 이후 설립되어 북미의 전기시스템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Co-ordinator 역할 수행

· 미국은 현재 10개 분야에 정보공유분석센터 운영중

※ Banking&finance, Chemicals, Emergency, Food, Government, Info&Comms, Transport, Water, Energy, Other(Real Estate)

○ 국내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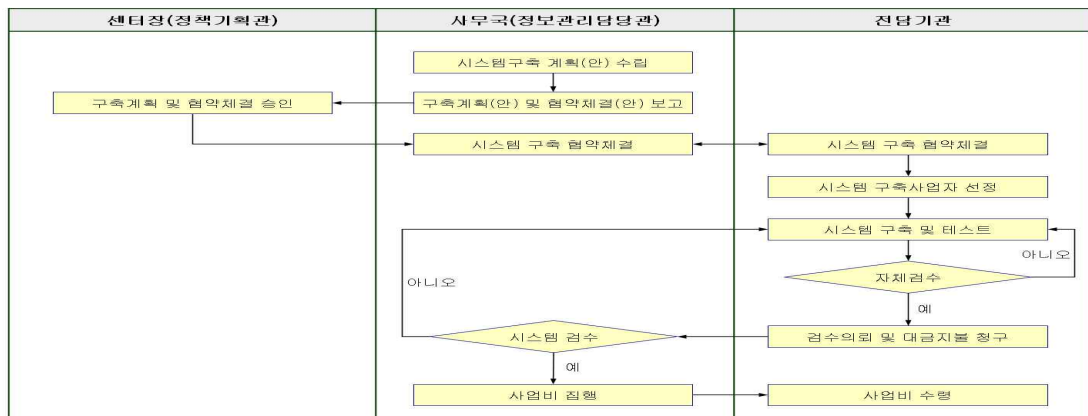
- 국가(NCSC) 및 분야별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 운영

·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국가사이버안전 정책수립(기획 · 조정)

· 분야별 사이버안전센터는 해당 소관기관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이버위협 정보수집 · 분석 · 전파

※ 행정, 국방, 외교, 국토, 보건, 산업, 교육, 통신, 금융, 재정, 노동, 법무 등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해당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등 조문내용

○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회원기관 현황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6조 제1항(정보공유 · 분석센터)

금융 · 통신 등 분야별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공유 · 분석센터를 구축 · 운영할 수 있다.

1. 취약점 및 침해요인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정보 제공
2.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실시간 정보 · 분석체계 운영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 제1항(보안관제센터의 설치 · 운영)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 · 분석하여 즉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구(이하 "보안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관제센터를 설치 ·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국가정보원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이 설치 ·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참고2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회원기관 현황

□ 사이버안전 대상기관 : 총 47개 기관

분야	기 관 명			기관수
에너지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전KPS,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전력기술, 전기공사협회,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지역난방공사, 광해관리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서부발전, 한전KDN, 한진원자력연료, 원자력문화재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한석탄공사, 지역난방기술, 광해관리공단	26
무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4
산업·R&D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다이텍연구원, 한국표준협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전자부품연구원, 강원랜드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광기술원, 자동차부품연구원,	17
합 계				47

통상정책국

통상정책국 세출예산현황

(백만원, %)

사업명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일반회계>	2,193	2,627	2,855	228	8.7
○통상정책수립 및 정책홍보	745	836	974	138	16.5
○다자통상협상추진 및 글로벌 경제협력 강화	553	846	963	117	13.8
○국제기구분담금	715	737	721	△16	△2.17
○무역투자정책수립운영	180	208	197	△11	△5.3

통상정책수립및정책홍보(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통상정책수립 및 정책 홍보	745	836	974	138	16.5

* 사업코드 : 110-113-1900-1932-301

* 담당자 : 통상정책국(김창규), 통상정책총괄과(안성일, 044-203-5620), 주무관(이도영, 5628)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3~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해당 없음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직접수행)

2. 사업목적

- 산업과 통상의 시너지를 강화하고 국내외 통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통상정책의 추진방향과 시행전략 수립 및 강화
 - 산업과 통상의 연계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통상정책의 추진
 - 산업계, 전문가, 국회 등 다양한 계층과 소통을 활성화하고, 관계부처와 협업을 제도화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통상정책 관련 협의체 운영 및 대국민 홍보 : 172백만원

- 통상현안에 대한 부처간 정보공유 및 소통강화를 위해 「통상추진위원회 규정」에 따른 통상추진위원회(실무회의 포함) 운영(4백만원(0.5백만원*8회))

- 통상정책 및 교섭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과 업종별 영향분석 등 민관 협업을 위한 「통상산업포럼」* 운영(16백만원)
 - 통상산업포럼 개최 : 7백만원(연2회*3.5백만원)
 - 통상산업포럼 워크숍 개최 : 9백만원(연2회*4.5백만원)
- 해외 비관세장벽 사례 평가 및 검토를 통한 비관세장벽 종합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비관세장벽 협의회 운영」*(8백만원)
 - * 비관세장벽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조직으로서 통상산업포럼內 각 분과별 분과장(업종별 협회 임원급)들로 구성(위원장: 차관보)
 - 비관세장벽 협의회 개최(분기별) : 8백만원(연4회*2백만원)
- 한-미FTA, 한-EU FTA 이행점검 및 주요국과의 통상 현안 대응을 위한 협의체 운영(114백만원)
 - 한-미FTA, 한-EU FTA 이행점검(분야별 작업반 회의) 및 통상 협의회 등 협의체 참석(94백만원)
 - * 94백만원(10회*평균 2.97백만*3인=89백만원 + 국내여비 5백만원)
 - 통상현안 및 국제규범 관련 법률 자문 : 20백만원
- 통상정책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한 홍보(30백만원)
 - 홍보물 제작 배포, 통상환경 책자발간, 언론 간담회 개최(30백만원)

② 통상절차법의 이행 : 402백만원

- 통상절차법 제9조 및 제11조에 의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 및 영향평가(360백만원)
 - * 한-중 FTA, 한-뉴질랜드 FTA 경제적 영향평가 등 9건 45백만원=360백만원
- 통상절차법 이행에 관한 법률적 자문을 위한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회의 개최(22백만원)
 - * 위원 자문료(30만*30명*2회)+회의개최(2백만원*2회) : 22백만원
- 통상절차법 해석, 개정, 이행에 관한 법률 자문(20백만원)

③ 통상전략 수립 : 200백만원

- 중장기 통상정책 수립, 양자간 통상현안 대응전략 및 다자통상협상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200백만원=40백만원*5건)

④ 해외 비관세장벽 대응 전략 수립 : 200백만원

- 주요 교역·투자 대상국의 통상 제도 및 환경 조사 연구(30백만원)
- 해외 비관세장벽 사례 발굴, 검토·평가, 대응전략 연구(120백만원)
- 비관세장벽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등 비관세장벽의 효율적 대응 관리 체계 마련(5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협약체 운영 및 홍보) 통상현안에 대한 민·관·학 정보공유 및 소통 활성화를 통해 국내외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의 지속적 홍보를 통해 통상정책의 대국민 이해도 제고
- (통상절차법의 이행) 주요국과의 FTA 체결건수 증가로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의무 검토사항이 누적되고 있으므로, 추가적 재원 투입을 통해 기체결된 FTA 및 협상중인 FTA의 성실한 교섭·이행을 지속적 관리·감독
- (통상전략 및 해외 비관세장벽 대응전략 수립) FTA 협상 대상국을 포함하여 다자 및 양자간 통상협상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 및 비관세장벽 등 원활한 통상정책 시행의 걸림돌에 대응하는 통상산업 전략 마련을 통해 국익 극대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통상정책수립 및 정책 홍보	745	836	974	138	16.5
▪ 통상정책 관련 협약체 운영 및 홍보	295	149	172	23	15.4
▪ 통상절차법의 이행	-	287	402	115	40.1
▪ 통상전략 수립	450	150	200	50	33.3
▪ 해외 비관세장벽 대응 전략 수립	-	250	200	△50	△20.0
☐ 비목	745	836	974	138	16.5
▪ 일반수용비(210-01)	151	167	120	△47	△28.1
▪ 국내여비(220-01)	2	5	5	-	-
▪ 국외여비(220-02)	207	59	89	30	50.8
▪ 연구개발비(260-00)	385	605	760	155	25.6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통상정책 수립 및 조약 체결 관련 국내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통상 추진 지원
- 통상절차법 상 제반 의무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통한 통상조약 체결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이해와 참여 증진
- 주요 협상 등 통상현안과 통상 환경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 하는 통상 전략 수립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8.36	▪통상협의회 운영 1.09, 통상정책 홍보 0.4, 통상절차법 이행 2.87, 통상전략수립 1.50, 주요국 통상환경연구 0.50, 해외비관세장벽 사례 수집 및 대응전략 수립 2.00
'15	9.74	▪통상협의회 운영 및 대국민 홍보 1.72, 통상절차법 이행 4.02, 통상전략수립 2.00, 해외 비관세장벽 대응 전략 수립 2.00
'16	8.57	▪통상협의회 운영 및 대국민 홍보 1.45, 통상절차법 이행 3.32, 통상전략수립 2.00, 해외 비관세장벽 대응 전략 수립 1.80
'17	9.26	▪통상협의회 운영 및 대국민 홍보 1.83, 통상절차법 이행 3.63, 통상전략수립 2.00, 해외 비관세장벽 대응 전략 수립 1.80
'18	7.87	▪통상협의회 운영 및 대국민 홍보 1.40, 통상절차법 이행 3.22, 통상전략수립 1.60, 해외 비관세장벽 대응 전략 수립 1.65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이행협약에 관한 절차규정*(대통령훈령)」
- 추진경위
 - '13년까지 FTA 산업대응체제 구축 및 다자간 협상전략수립 이행에 중점

[FTA 산업대응체제구축]

-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고 주요국과의 FTA 체결확대를 통한 수출시장의 안정적 확보 및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
- FTA 추진국 산업별 영향분석, 관세 양허안, 원산지 기준, 투자자유보안 등 최적 협상안 도출에 필요한 정책연구용역 수행지원

[다자간 협상전략수립]

-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무역협상인 DDA는 2001년 11월 도하 각료선언·정식 출범 이후 DDA 협상전략수립 및 협상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 DDA 협상 국외여비, 협상전략수립을 위한 실무작업반 운영
- '14년부터는 구 지경부 '통상협상전략수립'과 외교부 이관 '통상 외교연구' 및 '다자통상외교추진 및 정책홍보' 사업 간 구조조정을 통해 '통상정책 수립 및 정책홍보'와 '다자통상협상추진 및 글로벌 경제협력강화' 사업으로 변경
- 통상기능의 산업부 이관에 따라 산업과 통상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전략수립, 관계부처 및 기관 협업, 대국민 홍보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통상정책수립 및 정책홍보	7.6	5.5	9.4	8.4	9.7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7.6	2.15	-	9.75	8.99	0.5	0.26
	()	()	()	()	()	()	()
'12년	5.5	0.5	-	6.00	5.69	0.3	0.01
	()	()	()	()	()	()	()
'13년	9.4	0.3	-	9.70	7.45	0.35	190
	()	()	()	()	()	()	()

* 세수부족으로 인한 세출예산 절감 지침에 따른 경상경비 절감, 연구용역 계약금액과 실제 정산금액차이로 인한 불용액 발생 등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 해당사항 없음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 없음

다자통상협상추진및글로벌경제협력강화(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다자 통상협상 추진 및 글로벌 경제협력 강화	553	846	963	117	13.8%

* 사업코드 : 110-114-1900-1932-401

* 담당자 : 통상정책국장(김창규), 세계무역기구과장(김호철, 044-203-5630), 주무관(신세미, 5636)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3년~계속 외교부 "다자통상외교 추진 및 정책홍보"(01년~) 중 일부가 '13년부터 이체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
지원조건	-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직접수행)

2. 사업목적

- WTO DDA 협상 및 정례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 범세계적 시장개방 확대와 보편적인 무역규범 강화를 추진, 우리의 통상 이익 제고
- APEC, G20, OECD, 다보스포럼 등 다자협의체에 적극 참여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WTO 체제 강화와 다자간 협상 진전 추진 : 496백만원

- WTO 분야별 협상 참가 및 각료회의 운영*, 회의 결과 책자 및 양허안 분석자료집**(111백만원)

*** WTO 분야별 협상 참가 및 각료회의 운영**

- 분야별 협상 참가 및 각료회의 운영 직접 경비 7개 분야(농업, NAMA, 서비스, 무역원활화, ITA, 규범, SPS/TBT) 51 (1.5백만원*34회)
- WTO 분야별 협상대책반 운영 경비 10 (1백만원*10회)
- 협상 분야별 경과 및 협상타결안 대국민 설명을 위한 세미나·포럼 준비 10

*** 회의 결과 책자 및 양허안 분석자료집**

- 회의 결과 책자 및 양허안 분석자료집 10 (5백만원*2회)
- 양허안 작성 및 분석, 합의안에 대한 법률 자문 30 (15백만원*2회)

- 분야별 협상대책반, 주한외교단·관계부처 간 업무협약(30백만원)

- * 회의 대응협의, 분야별 협상대책반, 주한외교단, 관계부처간 업무협약 28 (50,000*10인*7개분야*8회)
- 협상 분야별 경과 및 협상타결안 설명을 위한 세미나 2 (50,000*40인*1회)

- 다자간 및 복수국간 협상 준비 지원요원 채용(12백만원)

- WTO 정례회의 참석 등 다자통상체제 논의 참여(343백만원)

- * 정례 각료회의 및 고위급 회의, 주요각료회의 계기 통상장관회담 참석 71 (35.5백만원*2회) / 분야별(농업, NAMA, 서비스, 무역원활화, ITA, 규범, SPS/TBT) 협상 참석 272 (8백만원*34회)

② APEC, OECD, G20, 다보스 포럼 등 지역경제협력 강화 : 202백만원

- APEC 및 OECD 고위급 회의, 실무급 위원회 등 참석(130백만원)

- * APEC 무역투자위원회(CTI, 연 3회) 및 고위관리회의(SOM, 연 4회) 참석 40
- 통상장관회의(MRT, 연 2회) 및 정상회의(연1회) 참석 45
- * OECD 무역위원회(연 2회), 각료이사회(무역세션, 연 1회) 참석 45

- G20, 다보스 포럼 참석(62백만원(31백만원*2회))

- 전문가 회의, 회의준비 및 의견수렴을 위한 관계부처/기관 대책 회의 및 업무협약 등 (10백만원)

③ 전세계 지역무역협정 모니터링/분석체계 구축 : 105백만원

- RTAs 모니터링 및 정보분석 추진, 세미나 개최(100백만원)

- * 주요국(유럽, 미주 권역 대상) 및 분야별 RTAs 모니터링 및 정보분석 추진 100

- 주요국 동향 파악 및 사전 실무 협의, 전문가 및 유관기관 접촉 협의(5백만원)

④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s) 참여 확대를 위한 APEC 사업 : 160백만원

- 전기전자 산업에서의 중소기업의 GVC 참여 관련 연구, APEC 역내 주요 산업별 GVC 참여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 등 총 2건의 연구용역 진행

□ 지원 필요성

- WTO 정례기구 회의 및 DDA 협상은 WTO 다자통상 분야의 기본적·필수적 활동인 바, 적극 참여를 통해 다자간 무역협상의 진전 및 보호주의 대응 등을 통한 우리의 통상국익 확보 필요
- G20, APEC, OECD, 다보스포럼 등 다자협의체에 적극 참여
 - APEC 및 OECD 무역투자 자유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사회의 통상관련 주요이슈를 파악하고 우리 입장을 반영
 - APEC 개도국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ODA와 연계한 해외 프로젝트 시장진출 기반 확대
- 통상기능의 산업부 이관에 따른 산업-통상을 연계한 APEC 사업 추진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확대를 위한 APEC 사업]

- APEC회원국의 산·관·학이 참가하는 GVCs PPP Forum(Global Value Chain Public-Private Partnership Forum)을 구성을 통해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수출확대 및 글로벌 가치사슬에의 편입 확대에 기여
- 자동차, 섬유 등 GVC 형성에 중요한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관심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아·태 시장 진출 지원 가능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다자 통상협상 추진 및 글로벌 경제 협력 강화(696백만원)	553	846	963	117	13.8
▪ WTO체제강화와 다자간 협상 진전 추진	243	519	496	△23	-4.4
▪ APEC, OECD, G20 등 지역경제협력 강화	0	212	202	△10	-4.7
▪ 중장기통상전략 수립 및 홍보사업	18	0	0	-	-
▪ 통상절차법의 이행	198	0	0	-	-
▪ 전세계 지역무역협정 모니터링/분석 체계 구축	94	115	105	△10	-8.7
▪ 중소기업의 GVCs 참여 확대를 위한 APEC 사업	0	0	160	160	-
☐ 비목	553	846	963	117	13.8
▪ 일용임금(110-01)	4	12	12	-	-
▪ 일반수용비(210-01)	82.3	127	94	△33	-26
▪ 특근매식비(210-05)	3.5	7.5	7.5	-	-
▪ 임차료(210-07)	0.2	9.5	9.5	-	-
▪ 위탁사업비(210-15)	44.6	100	100	-	-
▪ 국내여비(220-01)	0	0	0	-	-
▪ 국외업무여비(220-02)	272	545	535	△10	-2
▪ 사업추진비(240-01)	44.2	45	45	-	-
▪ 연구개발비(260-00)	102.5	0	160	160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다자무역체제의 대표적 수혜국으로서 WTO 분야별 협상 진전, 지역 협력 강화를 통해 시장개방 확대와 보편적인 통상규범 강화를 추진하여 우리의 통상이익 제고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8.46	▪ WTO다자협상(5.19), APEC 지역경제협력(2.12), RTA모니터링/분석(1.15)
'15	9.63	▪ WTO다자협상(5.19), APEC 지역경제협력(2.12), RTA분석(1.15), APEC 사업(1.6)
'16	8.47	▪ WTO다자협상(5.2), APEC 지역경제협력(2.12), RTA모니터링/분석(1.15)
'17	9.15	▪ WTO다자협상(5.6), APEC 지역경제협력(2.3), RTA모니터링/분석(1.25)
'18	7.78	▪ WTO다자협상(4.77), APEC 지역경제협력(1.94), RTA모니터링/분석(1.07)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정부조직법 제37조에 따라 통상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가 총괄·조정
 -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 제3항 제6호 및 제7호 : 세계무역기구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추진경위
 - WTO DDA : 2001년 11월 제 4차 WTO 각료회의(카타르 도하)에서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출범, 2002년부터 각 분야별 협상 개시
 - 2008년 잠정타협안 타결 실패 이후, Early Harvest, 복수국 간 협상 등 다른 접근방법 모색 중으로 '13년 제9차 각료회의 발리 패키지 타결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6.96	8.46	9.63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1-12년 해당없음(구 외교통상부 이체('13년)예산)
- 2013년
 - 전용 : DDA대응 등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비목 조정(200백만원, 운영비→여비), 통상관련 연구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비(30백만원) 및 통상업무 이관에 따른 비밀문서 시스템 구축 위한 운영비 등 (38백만원) 전용

- 이월 : 연구개발비 이월(16.4백만원)로, FTA 환경변화에 따라 연구 주제 선택 및 설계 지연 및 연구용역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부여함
- 불용 : 연구용역 및 위탁사업의 계약금액과 실제 정산금액의 차이로 인한 불용액 발생 및 조직개편 이후 '13년도 하반기 사무보조원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지급 지연(18백만원) 등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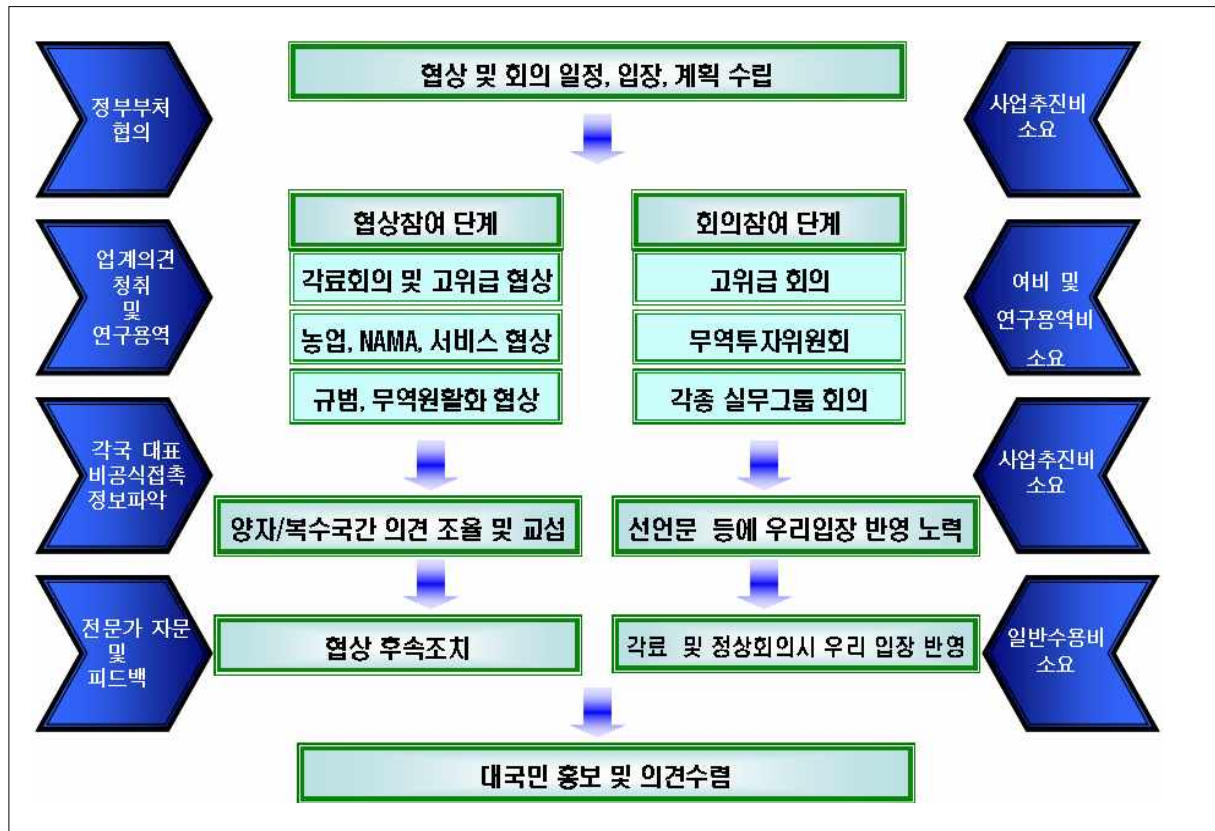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	()	()	()	()	()	()
'12년							
	()	()	()	()	()	()	()
'13년	6.96	0	(-0.68)	6.28	5.53	0.16	0.59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2013 회계연도 결산 국회(산업위) 지적사항
 - 지적사항 : “RTA확산에 대한 다자적 대응방안 검토연구”는 위탁사업비가 아닌 연구개발비로 집행이 타당
 - 대책 : 향후, 지적사항을 유념하여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14년 RTA 관련 사업 연구개발비로 집행)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국제기구분담금(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국제기구분담금	715	737	721	△16	△2.17

* 사업코드 : 110-113-1900-1932-302

* 담당자 : 통상정책국(김창규), 통상정책총괄과(안성일, 044-203-5620), 주무관(김동호, 5629)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54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기구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직접수행)

2. 사업목적

-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 납부를 통한 국제적 위상 제고 및 국제기구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내기업의 이익을 대변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국제도량형국 분담금 : 502백만원

- 산출내역 : '14년 예상 분담금 348,768유로 × 기준환율 1,440원/유로
- 348,768유로 = 330,680유로('15년 예상 분담금 총액 11,810,000유로에 대한 한국 분담 비율 28%) + 6,020유로(이란, 북한 등 면제국 할당) + 12,068유로('09년 이후 추가 운영비용 431,000유로에 대한 할당)

② 국제법정계량기구 분담금 : 80백만원

- 산출내역 : 예상 분담금 56,000유로 × 기준환율 1,440원/유로
- 56,000유로 = 회원국 할당 기준금액 14,000유로 × 조정계수4 (한국은 WB기준 인구수 48백만으로서 class3에 속함)

③ OECD조선평작업반 분담금 : 139백만원

- 산출내역 : '14년 예상 분담금 92,656유로 × 기준환율 1,440원/유로
- 97,000유로 = OECD 조선평작업반(party 6) 프로그램 총액예상 388,000유로 x 한국 분담비율 25%

□ 지원 필요성

- 국제기구 분담금 적기 납부를 통해 국제기구 활용에 참여하여 국제 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내산업에 유리한 교역환경을 조성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국제기구분담금	715	737	721	△16	△2.17
▪ 국제도량형국	498	515	502	△13	△2.52
▪ 국제법정계량기구	85	83	80	△3	△3.61
▪ OECD 조선평작업반	132	139	139	-	-
□ 국제기구분담금	715	737	721	△16	△2.17
▪ 국제부담금(340-02)	715	737	721	△16	△2.17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국제환율 및 각 국제기구의 분담금 규모를 파악하여 조약에 따른 의무 분담금 성실 납부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737	▪ 국제도량형국(5.15), 국제법정계량기구(0.83), OECD조선평작업반(1.39)
'15	721	▪ 국제도량형국(5.02), 국제법정계량기구(0.80), OECD조선평작업반(1.39)
'16	721	▪ 전년대비 특별한 변동요인이 없을 것으로 보임
'17	721	▪ 상동
'18	721	▪ 상동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미터협약 및 국제도량형사무소 설치에 관한 협약(조약 제51호)
- 국제법정계량기구 설치협약(조약 제635호)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관한 협약(조약 제1358호)

○ 추진경위

- '06년부터 6개 국제기구 분담금이 외교부에서 지경부로 이관
- '10년부터 국제설탕기구 분담금이 외교부에서 지경부로 이관
- '11년부터 섬유수출개도국기구가 비공식조직으로 전환되어 납부 제외
- 국제면화자문위원회 분담금 ODA예산 분리지침에 따라 분리
- '13년부터 국제납아연연구그룹 분담금이 의무/재량 분담금 분리지침에 따라 독자 세부사업으로 분리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국제기구분담금	8.75	7.84	7.23	7.37	7.21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3년 : 집행 시 환율하락으로 국제기구분담금 완납 후 8백만원 불용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8.75	-	-	8.75	8.75	-	-
	()	()	()	()	()	()	()
'12년	7.84	-	-	7.84	7.84	-	-
	()	()	()	()	()	()	()
'13년	7.23	-	-	7.23	7.15	-	0.08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 각 국제기구로부터 분담금 납부 요청 공문 접수 → 해당 분담금 직접 납부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사항 없음

무역투자정책수립운영(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무역투자정책수립운영	180	208	197	△11	△5.3

* 사업코드 : 110-116-7100-1733-302

* 담당자 : 통상정책국장(김창규), 통상정책총괄과(안성일, 044-203-5620), 주무관(이도영, 5628)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직접수행)

2. 사업목적

- 국제행사 연설문 작성 및 통역, 외빈면담, 국가간 정례협의체 지원, 외국 공식서한 작성 등 대외 통상업무 지원을 위한 통·번역사 운영
- '13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통상기능의 산업부 이관으로 대외협력 업무 및 통·번역 수요 증가로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4명*의 에디터에 대한 급여 운영 : 197백만원

* 영어 3명(한국인 2명, 원어민 1명), 중국어 1명

- 재직기간 및 언어에 따라 급여 차등 지급

* 3.6백만원*13개월*1명 + 4.1백만원*13개월*1명 + 3.65백만원*13개월*2명 = 197백만원

** 연단위 퇴직금 산정을 위해 13개월 적용

□ 지원 필요성

- 국제행사 연설문 작성 및 통역, 외빈면담, 국가간 정례협의체 지원, 외국 공식서한 작성 등 대외 통상업무 지원을 위한 통·번역사 운영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무역투자정책수립운영	180	208	197	△16	△2.17
▪ 무역투자정책수립운영	180	208	197	△13	△2.52
□ 무역투자정책수립운영	180	208	197	△16	△2.17
▪ 연구개발비(260-00)	180	208	197	△16	△2.17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대외 통상업무 지원을 위한 통·번역사를 안정적으로 운영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208	▪ 에디터 급여 2.08억원
'15	197	▪ 에디터 급여 1.97억원
'16	173	▪ 에디터 급여 1.73억원
'17	187	▪ 에디터 급여 1.87억원
'18	159	▪ 에디터 급여 1.59억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해당없음
- 추진경위 : 산업통상자원부 통번역 에디터 운용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국제기구분담금	1.57	1.57	2.08	2.08	1.97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에디터 교체 등으로 발생하는 재직기간별 급여차로 인해 불용 발생하고, 일부 타비목으로 전용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1.57	-	-	1.57	1.52	-	0.05
	()	()	()	()	()	()	()
'12년	1.57	-	△0.20	1.37	1.37	-	-
	()	()	()	()	()	()	()
'13년	2.08	-	△0.28	1.80	1.80	-	-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 산업통상자원부 에디터 급여운영 예산으로 직접수행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사항 없음

통상협력국

통상협력국 세출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일반회계>	13,262	13,711	15,325	1,614	11.8
○ 양자산업협력	7,405	6,965	7,116	500	7.2
○ 산업자원협력개발지원 (ODA)	5,600	6,600	8,070	1,470	22.3
○ 국제면화자문위원회분담금 (ODA)	47	46	44	△2	△4.4
○ 한중일 통상협력 기반구축	210	100	95	△5	△5

양자산업협력(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 (A)	2015예산 (B)	증 감 (B-A)	%
○ 양자산업협력	7,405	6,965	7,116	500	7.2

* 사업코드 : 21-11-0-113-11-1900-1931-301

* 담당자 : 통상협력국장(이상진), 통상협력총괄과장(안병화, 044-203-5680), 사무관(이도안, 5686)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93~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
사업시행주체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국무역협회 등 국제협력사업 기관

2. 사업목적

□ 대통령 및 장·차관 등 고위급 해외순방과 상대국 정상 등의 방한 기회를 활용하여 국가별 산업자원협력을 증진

-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 시장개척을 위해 동남아, 중남미 등 자원부국인 신흥개도국과의 정부간 협력채널을 구축·운영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인프라 구축

* 정부간 협력채널 : 70개(산업분야 33, 자원분야 37, '14.1월 기준)

- 美, 日, EU 등 주요 선진국과의 산업정책 공유 및 통상협력 강화로 거대시장의 안정적 확보
-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시 애로를 겪고 있는 프로젝트 금융에 대한 국가간(국제개발금융기관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 산업자원 협력 기반 조성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전략국가별 맞춤형 산업자원협력전략 수립지원(851백만원)

- 동북아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對中 진출전략 연구 및 일본 경제, 산업 조사연구 등을 통한 한-일 협력전략 수립(651백만원)
 - * 중국경제 연구 및 전문가 포럼 운영, 일본 경제통상, 산업자원, 비즈니스 이슈에 대한 분석 및 정책제언 등
- 아세안 주요 유망 산업 연계진출 방안 연구 등 아세안 지역 협력 전략(200백만원)

○ 정부간 협력채널 운영지원(2,000백만원)

- 아주지역 정부간 협력채널(15개) 운영지원(470백만원)
 - * 한-인니 경협위원회 및 에너지 포럼, 한-베트남 공동위원회, 한-말련 산업협력WG 등
- 중남미 경협센터 운영* 및 산업·자원분야 협력위 개최(260백만원)
 - *한-중남미 태평양 경협센터(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등), 한-중남미 대서양 경협센터 (브라질,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등) 운영
- 한-카자흐·우즈베크·투르크·아제르지역과의 정부간 협력채널 운영(4개)을 통한 양국간 통상협력 강화 (50백만원)
 - * 한-카자흐 자원협력위('04부터 8회 개최), 한-우즈베크 산업자원위('06년부터 4회 개최), 한-투르크 공동위('08부터 4회 개최), 한-아제르 협력위('13년부터 1회 개최)
- 동북아(중국, 일본) 지역간 협력채널 운영(900백만원)
 - * 한중 통상장관회의, 한-광둥성 경제무역 발전포럼, 한-섬서성 협력 공동연구 및 협의체 운영, 한-섬서성 경제협력 강화사업, 한-일 경제인회의, 지역경제교류회의 (한·큐슈, 한·호쿠리쿠, 한·도호쿠, 환황해) 등
- 아프리카·중동 주요 협력국(남아공, 에티오피아, 가나, GCC국가)과의 정부간 협력채널 운영(220백만원)
- 구주 지역간 협력채널 운영(100백만원)

○ 주요국 인사 네트워크 구축지원(1,775백만원)

- 한-중남미 비즈니스 포럼 및 중남미 주한 대사관과 정부, 공공기관,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협의회 개최(200백만원)
- 산업협력 포럼 개최 등을 통한 중화권 네트워크 구축, 일본 산업계와의 기술 및 인적 교류를 통한 일본내 네트워크 구축(300백만원)
 - * 한-대만 산업협력 포럼, 한-일 산업기술페어 등
- 중앙아 및 CIS지역 진출 뉴실크로드 협의회, 신흥시장진출협의회 운영(200백만원)
 - * 신흥시장 진출 데스크 운영, 신흥시장 진출 포럼 개최 및 시장조사 등
- 주요 동남아 국가 진출기업 경영지원 교류회, 한-서남아 비즈니스 포럼 등 아세안 지역 네트워크 구축(500백만원)
- 한-EU 통상협력 사절단 파견, EU 협력 네트워크 포럼,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 포럼한-러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 사업,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한-러 비즈니스 어워드 등 EU 및 러시아지역 네트워크 확대(250백만원)
- 아프리카 주요 국가 발주처 인사 초청, 플랜트-건설-인프라 등 현지 유관기관 협력 등 아프리카 지역 네트워크 구축및 중동·아프리카 주요국과의 비즈니스워크 개최(325백만원)

○ 정상회담·고위급 순방 계기 민관합동 경제협력 지원(2,000백만원)

- 고위급 순방 계기 중남미 중점 협력 분야에 대한 지원(110백만원)
- 중국진출기업과 중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간 교류 지원, 통상 사절단 파견, 한-중 비즈니스 교류 촉진, 한-일 기업간 비즈니스 매칭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일본 진출 지원(1,100백만원)
 - * 재중 한국기업 경영지원 교류회, 중국 통상사절단 파견, 한중 무역투자정보망 운영 및 관리, 한-일 협력 기술인재 양성, 한-일 온·오프라인 비즈니스 매칭 등

- 한-카자흐·우즈벡·투르크 민간경협위 비즈니스·투자포럼 등 중앙아 지역 경제협력 (100백만원)
- 對중동·아프리카 정보제공, 전문가포럼, 민간 경협위 개최 및 아랍어포탈 구축 등 한-중동·아프리카 민관 경제협력 채널구축사업(180백만원)
- 아세안 지역국 경협 및 산업자원협력단 파견, 아세안 한국진출기업 지원사업 등 아세안 지역 경제협력(510백만원)

○ 산업자원협력 기반구축 사업(490백만원)

- 정상외교 경제활용포털 데이터베이스 운영 (300백만원)
 - * 정상외교 성과를 기업이 활용하도록 정상공동성명, 기업관련 MOU 등 순방관련 정보와 비즈니스 활용 정보를 기업에 DB로 제공
- KOREA-MDB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 (90백만원)
 - * 우리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 자원조달을 위한 협력세미나 개최 등 기반구축
- 해외플랜트 펀드 조성 지원, 다자개발은행 프로젝트 수주지원 등 우리기업의 프로젝트 금융애로 해소 지원 (1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거대 신흥개도국, 미개척 자원부국 선점을 위한 경제협력 확대 필요
 - 정상외교 및 고위급 방문과 연계한 에너지자원 개발 등을 포괄하는 패키지형 경제협력 지원
 -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및 러시아, 중앙아 등 자원부국과의 산업협력위, 민간 교류행사, 기술교류 등 협력기반 구축 필요
 -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시아, 중국 등 지역내 신흥국과의 협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 교류사업 추진 지원
- 주요 교역국인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과의 경제적 동반자관계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경제협력 지원 필요
 - 녹색기술 등 선진기술 공동개발 확대, FTA발효 대비 협력강화

- 통상환경은 단순한 협상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국의 요구 사항과 우리의 필요사항이 연계된 협력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어,
-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맞춤형 산업자원협력 전략 수립지원 등 산업자원협력 정책기능 지원 강화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 양자산업협력	7,405	6,965	7,116	500	7.2
▪ 전략국가별 맞춤형 산업자원 협력전략 수립지원	1,230	973	851	△122	△20.8
▪ 정부간 협력채널 운영지원	1,590	1,514	2,000	486	32.1
▪ 주요국 인사 네트워크 구축지원	1,685	1,875	1,775	△100	△5.3
▪ 정상회담·고위급 순방 계기 민관 합동 경제협력 지원	2,650	2,353	2,000	△353	△15.0
▪ 산업자원협력 기반 구축	250	250	490	240	96
☐ 비목(합계)	7,405	6,965	7,116	500	7.2
○ 민간경상보조(320-01)	7,405	6,965	7,116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신흥시장 선점을 위해 개도국과의 통상협력 비중 확대
- 국가별 중점 협력분야 프로젝트 발굴 및 관련 사업 지원

-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등 정부간 협력채널이 중요한 자원부국과의 정부간, 민관합동 협력채널 등 통상인프라 구축에 주력
- 기술지원, 전문가 교류 등 개발협력 성격의 다양한 양자협력사업 확대로 우리기업 동반진출 유도
- 선진 경제권과는 대외경제협력채 등을 통한 통상현안 해소, 녹색기술 공동연구 등 경제협력 고도화 추진
- 신재생에너지, 첨단기술 등 산업기술 협력 강화, 전문인력 교류 지원 등
-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산업발전정책 체계화, 맞춤형 산업자원협력 전략수립 지원 등 산업자원협력 기반구축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4	69.65	○ 신흥시장과의 자원확보 등 전략적 협력 : 48.44 ○ 선진시장과의 산업협력 및 통상협력 고도화 : 18.71 ○ 전략수립, 금융협력 등 산업자원협력기반구축 : 2.5
'15	71.16	○ 신흥시장과의 자원확보 등 전략적 협력 : 39.00 ○ 선진시장과의 산업협력 및 통상협력 고도화 : 27.26 ○ 전략수립, 금융협력 등 산업자원협력기반구축 : 4.9
'16	62.62	○ 신흥시장과의 자원확보 등 전략적 협력 : 36.94 ○ 선진시장과의 산업협력 및 통상협력 고도화 : 15.00 ○ 전략수립, 금융협력 등 산업자원협력기반구축 : 10.68
'17	67.63	○ 신흥시장과의 자원확보 등 전략적 협력 : 30 ○ 선진시장과의 산업협력 및 통상협력 고도화 : 14 ○ 전략수립, 금융협력 등 산업자원협력기반구축 : 23.63
'18	57.49	○ 신흥시장과의 자원확보 등 전략적 협력 : 30 ○ 선진시장과의 산업협력 및 통상협력 고도화 : 14 ○ 전략수립, 금융협력 등 산업자원협력기반구축 : 13.49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대외무역법 제4조(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및 제8조(민간 협력 활동의 지원 등)

○ 추진경위

- '92.1 : 한일정상회담(서울)에서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실천사업 합의
- '93.1 : 한일산업협력 사업 시행
- '93.4 : 한미산업기술협력기금 설치 제안(한미통상장관 회담)
- '96.1 : 산업협력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EU 고위협의회)
- '96.11 : 대통령 동남아 순방 후속사업으로 한아세안산업기술협력 사업 추진
- '98.1 : 한미 · 한EU · 한아세안 산업기술협력사업 시행
- '01.5 : 국무총리 중동순방 후속사업으로 한중동 산업협력 사업 기획
- '03.1 : 한중동산업협력사업 시행
- '04.1 : 한아세안산업협력사업에서 한중협력사업을 분리
- '06.4 :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한-알제리 경제협력 T/F 발족
- '06.5 :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아제르바이잔 경제협력
- '06.10 : “아세안 중소기업 경영인 초청연수 사업”과 “여성 중소기업인 네트워크사업”이 한 · 아세안 FTA 경제협력 공식 사업으로 채택
- '08.5 : 총리 중앙아방문계기 우즈벡, 카자흐, 투르크 등 비즈니스 포럼 개최
- '08.9 : 2008년 한-아프리카 산업협력 포럼 개최
- '08.9 : 러시아 정상방문계기 한러 산업협력 강화
- '08.10 : 한-아세안 FTA 경제협력 작업반 회의 후속조치
- '09.1 : 한 · 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기업의 대한 진출지원 합의
- '09.5 : 대통령 중앙아 순방계기 우즈벡, 카자흐 등 주요 국가별 비즈니스포럼 개최시 상호 보완적인 다양한 협력사업 확대 제의
- '09.6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아세안 협력강화 합의

- '10.12 :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인니 경제개발 마스터 플랜의 주요 파트너로 참여 합의
- '11.5 : 제1차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실무 T/F 회의 개최
- '11.7 : 대통령 아프리카(남아공, DR콩고, 에티오피아) 순방
- '11.8 : 대통령 카자흐, 몽골 순방, 제2차 한-미 산업협력위 개최
- '11.10 : 제2차 한-인니 경협 실무 T/F회의, 한-몽골 자원협력위
- '11.11 : G20 정상회담, APEC 정상회의, ASEAN+3 정상회담
- '11.12 : 제3차 한-콜롬비아 산업협력위, 제5차 한-미얀마 자원협력위
- '12.01 : 한-중 정상회의, 제4차 중남미 경제협력간담회 개최
- '12.02 : 대통령 중동, 중부유럽(터키, 헝가리) 순방, 제4차 한-헝가리 산업협력위, 제1차 한-인니 경제협력위
- '12.04 : 한-베네수엘라 자원협력위
- '12.05 : 한-중-일 정상회의, 한-미얀마 정상회의, 제9차 한-알제리 경협 T/F회의 개최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 양자산업협력	82	82	74	69.65	71.16

(2) 최근 3년간 이 · 전용, 이월 · 불용실적

- '11~'13년간 이 · 전용, 이월 · 불용 없이 전액 집행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82 ()	- ()	- ()	82 ()	82 (100%)	- ()	- ()
'12년	82 ()	- ()	- ()	82 ()	82 (100%)	- ()	- ()
'13년	74.05 ()	- ()	- ()	74.05 ()	74.05 (100%)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① 2010년 지적사항 ('09결산 지경위 검토보고서)

- 세부사업 및 대행기관의 선정은 공개경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이를 심사·결정하는 각 협력사업의 조성심의회는 지식경제부 공무원과 주관기관 담당자로 구성되어 있어 객관성과 전문성이 미흡한 실정임
- '양자산업협력사업'의 성과지표는 "수출상위 20위 이후의 신흥시장 수출비중"이며, 이는 각 국가별 총수출액을 순위별로 산출하여 1-20위 국가를 제외한 20위 이후의 국가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바, 동사업의 8개 양자산업협력은 아시아·아프리카·러시아CIS·중동 이외에도 일본·중국·미주·EU를 포함하고 있어서 위와 같은 성과지표는 전체 사업의 절반에 대한 성과지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② 2011년 지적사항

- (2011.1.19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에서 작성한 국회지적사항) 각 세부사업들의 예산집행은 실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시행주체별로 세부집행내역이 확인되지 않거나, 사업담당자가 각각의 기준을 적용하여 정산처리 하는 등 문제 있음
- (2011.7.22, 재정사업자율평가) 성과지표 목표치 수준의 합리적 설정 근거가 미흡함에 따라 수정 필요

⑤ 2012년 지적사항

- ('13년 예산 예결위 검토보고서)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의 고유사업과 중첩되는 사업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① 2010년 지적사항 답변

- 세부사업 및 대행기관 선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자산업협력 사업 운영지침”을 제정 및 시행('10.12월)하고, 이에 따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양자산업협력사업선정위원회』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음
- 기존 성과지표가 양자산업협력사업의 독자적인 성과를 나타내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2011년부터는 새로운 성과지표(신흥시장진출법인수)를 도입

② 2011년 지적사항 답변

- 양자산업협력 사업 운영지침 제정 및 시행('10.12월)함에 따라, 세부사업자가 사업비 산정시 '정부예산편성 기준'을 준용하고(운영지침 제15조), 정산시 항목별 세부 집행내역을 명기하고 모든 항목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규정(제17조, [별지4]). 그 외에도, 별도계정을 통한 사업비 관리(제16조), 사

업비 잔액 및 이자수입 반납(제17조) 등을 규정하여 세부사업자의 보조금 사용에 대한 감시를 강화토록 조치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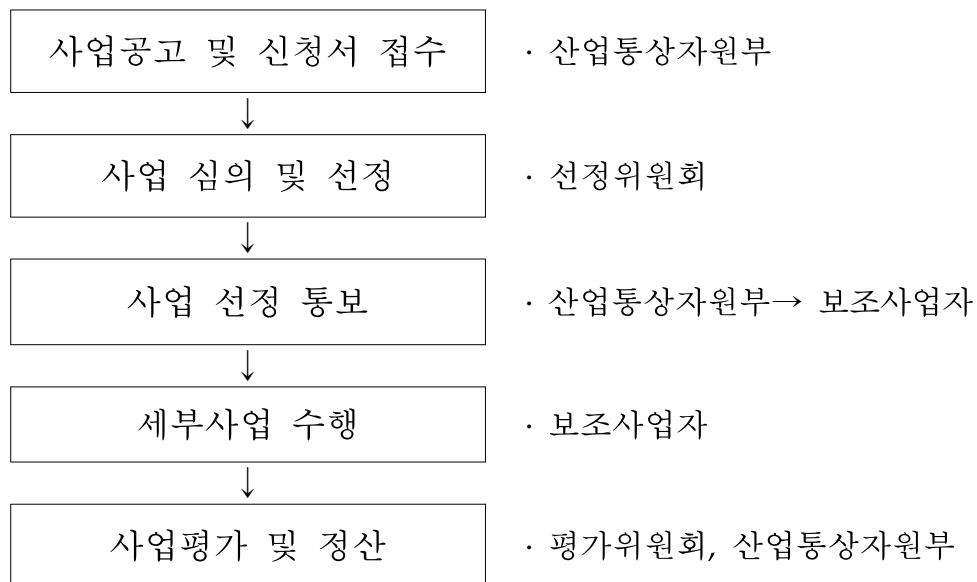
- o '12년 성과지표를 정부간 협력채널 신규확대 및 운영 성과(수행성과)와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확대를 위한 해외법인개설 수(기여성과)를 성과지표로 변경 설정

③ 2012년 지적사항 답변

- o KOTRA고유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KOTRA가 자체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정부간 또는 민관 공동 협력채널을 통한 협력기반 조성 및 경험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하겠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5) 사업추진절차



- * 단, 한일 산업협력 사업은 '92년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간 협력사업 전담 기관으로 한일재단, 일한재단을 설립 · 운영하기로 합의한 바, 한일재단이 사업주관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산업자원협력개발지원(계속, ODA)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 (A)	2015예산 (B)	증 감 (B-A)	%
○ 산업자원협력개발지원	5,600	6,600	8,070	1,470	22.3

* 사업코드 : 21-11-0-113-11-1900-1931-302

* 담당자 : 통상협력국장(이상진), 통상협력총괄과장(안병화, 044-203-5680), 사무관(이도안, 5686)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2 ~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출연, 민간경상보조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사업목적

- ☐ 개도국의 산업화 지원요구에 적극 대응하여 ①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②대형 프로젝트 수주지원 등 미래먹거리 창출, ③효과적인 산업자원협력을 지원

3. '14년 예산 내용

-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동남아 개발협력 지원 (5,170백만원)

- **(베트남 인큐베이터파크 사업)** 원전수출과 연계한 쌀가공 등 3대 산업협력거점 마련을 위한 ‘한-베트남 인큐베이터파크’ 조성 지원을 위한 사업비 (4,230백만원)

- * 한-베트남 인큐베이터파크 조성사업은 한-베 정상 공동성명(‘13.9)에서 베트남 원전사업 수주를 위한 양국 경제협력과제로 채택되었으며, 쌀가공, 농기계, 수산물가공 기술지원을 목적으로 건너市 내 13,000m2 규모의 본부동 및 시험생산동으로 구성·완공 예정(‘15년)
- * 인큐베이터파크 건축비 : 총 소요금액(9,800백만원) 중 잔액 2,260백만원
- * 시험생산동 파일럿 장비 구매 및 구축비 1,750백만원, 시설물 설치비 100백만원
- * 쌀가공, 수산가공 등 산업 분야별 시범사업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120백만원

- **(베트남 농업기계화지원)** 국내 농기계 관련기업의 동남아 시장 진출기반 마련 및 베트남 농업기계화 육성 지원을 위한 국산 농기계 개량 및 보급을 위한 사업비 (590백만원)

- * 한국 농기계를 현지 환경에 부합하도록 현지맞춤화(Spec-Down)하고, 제조원가를 20~30% 절감시 가격 경쟁력 확보 가능
- * 현지 맞춤형 농기계 개량연구 150백만원
- * 신형 및 구형 파일럿 장비(트랙터(5대), 이앙기(5대), 콤바인(5대) 등) 개량생산 및 보급 210백만원
- * 농업기계화 로드맵 수립 및 산업단지 구축방안 자문 100백만원
- * 농기계 정비 관리센터 운영 130백만원

- **(인도네시아 산업경제협력)** 한-인도네시아간의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산업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을 위한 사업비 (350백만원)

- * ‘12년 이후 인도네시아 경협사무소를 거점으로 담당부처인 경제조정부와 협력사업 선정을 위한 협의 중이며, 본 사업을 통해 시범사업 발굴 예정
- * 현지 경협사무소 운영 및 파견인력 인건비 80백만원
- * 초청연수 프로그램 운영 150백만원
- *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 마스터플랜 수립 120백만원

○ 중앙아·CIS 개발협력 지원 (2,300백만원)

- **(우즈벡 섬유산업 고부가가치화 지원)** 우즈벡 섬유산업기반 육성 및 국내 섬유기업의 현지 진출기반 마련을 위한 ‘한-우즈벡 섬유 테크노파크’ 조성 사업비 (2,100백만원)

- * 한-우즈벡 섬유테크노파크는 VIP 방우시('14.6) 양국 경제협력 아젠다로 채택되었으며, 우즈벡 타슈켄트 대학 내 섬유기술 이전 및 교육을 위한 교육동, 상용화 기술 검증을 위한 Pilot동 등으로 구성 예정
- * 방직, 제직, 편직, 염색가공, 봉제, 패션디자인 등 우리의 강점보유 분야를 중심으로 현지기업 기술지도, 초청연수 등을 통해 국내 진출기업의 인력수급 등 연계
- * 한-우즈벡 섬유테크노파크 기본설계 100백만원
- * 한-우즈벡 섬유테크노파크 상세설계/감리/토목공사 850백만원
- * 한-우즈벡 섬유테크노파크 건물착공(계약금) 1,000백만원
- * 현지 기술인력 교육 (2회) 150백만원

- (우즈벡 태양광 발전 협력) 국내 태양광 기업들의 중앙아 진출 거점 마련을 위한 우즈벡 태양광 발전 실증단지 조성 사업비 (200백만원)
 - * 우즈벡 태양광 발전 협력사업은 VIP 방우시('14.6) 양국 경제협력 아젠다로 채택되었으며, 향후 우즈벡이 발주예정인 사마르칸트 프로젝트 등과 연계 추진 예정
 - * 태양광 발전 실증단지 운영 : 30백만원
 - * 태양광 발전 실증단지 운영 데이터 분서 및 DB화 100백만원
 - * 현지인력 기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2회) 70백만원

○ 산업개발 컨설팅 지원

- 개도국 수요를 발굴, 우리 기업들의 현지시장 진출지원에 필요한 pre-F/S(사전타당성 조사) 수행을 통해 지속적인 개도국과의 개발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사업비 (600백만원)
 - * 산업개발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동북아, 중남미, 아프리카 권역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협력 사업을 발굴, 본 사업으로 연계 추진 예정
 - * ODA 전략분야 pre-F/S 지원 400백만원(2개×200백만원)
 - * 국제조달시장 진출 pre-F/S 지원 200백만원(2개×1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신흥국가의 고성장에 따라 대형 인프라 사업 수요 증대 등 내수시장 확대에 신흥국가와의 협력 강화가 중요
- 또한 신흥국들은 앞으로 성장잠재력이 크고 풍부한 자원부존량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새로운 잠재적 시장임에 분명함

- 한편, 신흥국과의 산업자원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국의 요구와 우리의 필요사항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
- 따라서 원전·플랜트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 지원과 이를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산업자원협력 지원 및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 산업자원협력개발지원	5,600	6,600	8,076	1,470	22.3
▪ 중남미 개발협력지원	545	545		-	-
▪ 동북아 개발협력지원	325	325		-	-
▪ 중앙아·CIS 개발협력지원	180	680	2,300	1620	238.2
▪ 동남아 개발협력지원	4,250	4,750	5,170	420	8.8
▪ 아프리카 개발협력지원	300	300	0	-	-
▪ 아프리카 개발협력지원			600		
☐ 비목(합계)	5,600	6,600	8,076	1,470	22.3
○ 민간경상보조(320-01)	2,500	2,400	5,970	3570	148.8
○ 출연(350-01)	3,100	4,200	2,100	△2100	△5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정상 외교, 양국간 협력 MOU 체결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지원하기로 한 합의한 사항에 대한 충실한 이행
 - 지원사업의 적시성 있는 추진을 통해 상대국 요구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함으로써 효과적인 산업자원협력에 기여
-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사전조사(F/S 등), 관련 기술 지원, 인력 교육 지원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와 연계된 지원 사업 이행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4	66.00	• 중남미 개발협력 지원 : 545백만원 • 중앙아·CIS 개발협력 지원 : 680백만원 • 동북아 개발협력 지원 : 325백만원 • 동남아 개발협력 지원 : 4,750백만원 • 아프리카 개발협력 지원 : 300백만원
'15	80.7	• 중앙아·CIS 개발협력 지원 : 2,300백만원 • 동남아 개발협력 지원 : 5,170백만원 • 산업개발컨설팅 : 600백만원
'16	97.32	• 대형 프로젝트 수주 및 신흥국에 대한 적정기술 보급 지원 등 정부간 산업자원협력 확대에 따른 상대국 지원사업 수요 증대
'17	96.05	• 대형 프로젝트 수주 및 신흥국에 대한 적정기술 보급 지원 등 정부간 산업자원협력 확대에 따른 상대국 지원사업 수요 증대
'18	105.66	• 대형 프로젝트 수주 및 신흥국에 대한 적정기술 보급 지원 등 정부간 산업자원협력 확대에 따른 상대국 지원사업 수요 증대

* 중기재정소요는 기재부에서 확정 한 14-18중기재정계획 기준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대외무역법 제4조(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및 제8조(민간 협력 활동의 지원 등)

○ 추진경위

- 한국-베트남간 경제협력 패키지 사업으로 ‘한-베 인큐베이터파크 조성사업’ MOU 체결(‘12.3월 한 지경부 - 베트남 산업무역부)
- 한-인니 인니 경제개발 및 산업별 발전방안 수립지원 정상합의(‘10.12)
- ‘한-인니 경제협력 파트너십을 위한 MOU’(지경부-경제조정부) 체결(‘11.5)
- 몽골 에너지자원협력 지경부(한국)-광업에너지부(몽골) MOU 체결(‘11.8월 정상 몽골 순방시)
- 한-캄보디아 NPCC와 기술협력 MOU 체결(‘11.5)
- 한-에티오피아 섬유기술협력 MOU 체결(‘11.11, 한 지경부- 산업부)
- 우즈베크 태양광 에너지 개발 협력을 위한 MOU체결(‘13.12, 산업부-재무부)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 산업자원협력 개발지원	-	50.48	56.00	66.00	80.7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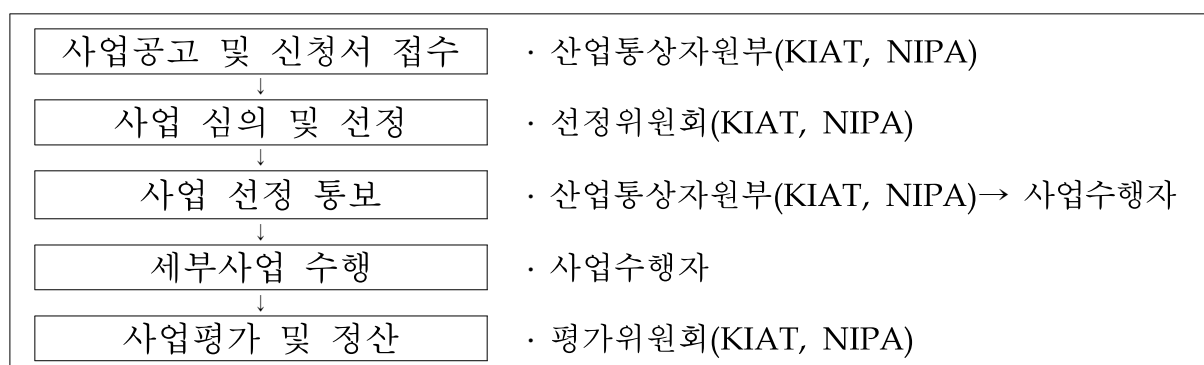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	()	()	()	()	()	()
'11년	()	()	()	()	()	()	()
'12년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2013년 지적사항
 - ('13년 예산 국회 예정처) 사업 기획 과정에서 국제개발협력 관련부처와의 사전협의 및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의·조정을 통해 사업 효과성 제고 필요
- 지적사항 후속조치
 - (재정부 KSP 사업과는 차별성) 경제발전 경험 전반에 걸친 정책자문을 실시하는 KSP와 달리 양국간 정상 합의사항, MOU 체결 등과 관련된 지원 사업 이행
 - (관련 부처 및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의 연계·조정 가능성) 기재부 KSP 사업 및 외교부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 산업부가 참여, 위원회의 시행계획 검토 과정에서 연계·조정
 - 향후 ODA 효과성 제고 위해 관련 부처와 보다 긴밀한 협의 추진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국제면화자문위원회분담금(계속, ODA)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 (A)	2015예산 (B)	증 감 (B-A)	%
○ 국제면화자문위원회분담금	47	46	44	△2	△4.4

* 사업코드 : 21-11-0-113-11-1900-1932-303

* 담당자 : 통상협력국장(이상진), 통상협력총괄과장(안병화, 044-203-5680), 사무관(이도안, 5686)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54~ 계속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사업규모	해당사항 없음
지원조건	분담금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2. 사업목적

- ☐ 국제면화자문위원회 가입에 따른 의무분담금 납부를 통해 국내 면방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한국의 위상제고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국제면화자문위원회 규약(조약 제1387호)에 의한 분담금 44백만원
 - 44백만원 = \$41,200 {=\$16,200(전체 예산의 40% 회원국 균등 분담액) + \$25,000(교역비중에 따른 배분액, 한국 '09.8~'12.10간 평균 교역량 약 200,000 ton/전세계 교역량 약 9500,000ton)} x 기준환율 1,100원/달러

□ 지원 필요성

- 국제면화자문위원회 회원국 활동을 통해 국내 면방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 국제면화자문위원회분담금	47	46	44	△2	△4.4
□ 비목(합계)	47	46	44	△2	△4.4
○ 국제분담금(340-02)	47	46	44	△2	△4.4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국제면화자문위원회에서 한국의 위상 유지 및 국내 면방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분담금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0.47	공동배분금액(일정액) + 국별 4년간 원면교역량(TON)평균에 따른 요율에 따라 산정
'14	0.46	상동
'15	0.44	상동
'16	0.48	상동
'17	0.53	상동
'18	0.58	상동

* 중기재정소요는 기재부에서 확정 한 14-18중기재정계획 기준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국제면화자문위원회 규약(조약 제1387호)
- 추진경위
 - '53년 국제면화자문위원회 가입, '54년 3월 1일 조약 발효
 - '06년부터 6개 국제기구 예산업무가 외교부에서 지경부로 이관
 - '12년부터 국제면화자문위원회 분담금이 ODA예산 분리 지침에 따라 독자 세부사업으로 분리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 국제면화자문위원회분담금	0.51	0.47	0.47	0.46	0.44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이·전용, 이월·불용없이 전액집행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0.51 ()	- ()	- ()	0.51 ()	0.51 (100%)	- ()	- ()
'12년	0.51 ()	- ()	- ()	0.51 ()	0.51 (100%)	- ()	- ()
'13년	0.47 ()	- ()	- ()	0.47 ()	0.47 (100%)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기구로부터 분담금 납부 요청 공문 접수 → 해당 분담금 직접 납부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한중일 통상협력기반구축(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한중일 통상협력 기반구축	21	100	95	△5	△5

* 사업코드 : 21-11-0-110-113-19001932-402

* 담당자 : 통상협력국장(이상진), 동북아통상과장(이재근, 044-203-5690), 박근형(이도안, 5692)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0년~계속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사업규모	해당사항 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2. 사업목적

-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한중일 통상장관회의' 개최를 내실화 하여 3국간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나아가 동북아 경제통합의 기반마련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한중일 통상협의회체 운영·지원 : 95백만원
 - 한중일 통상장관회의 및 고위실무자급 협의체, 관련 국내외 정부 간 업무협의 지원 : 35백만원
 - 공식회의 결과보고서 작성 및 한중일 협력 합의사항 이행 평가 보고서 작성·발간 : 20백만원
 - 관련 회의 및 협의체 참석을 위한 국외여비 : 25백만원
 - 업무추진비 : 15백만원

□ 지원 필요성

- 한중일 통상장관회의는 한중일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매년 개최되는 회의체로서, 3국의 산업분야 정책 공조 및 통상 현안 논의
- 특히 한중일 FTA 시대를 맞아, 장관급 회의 뿐만 아니라 고위 실무자급 회의를 활발히 진행하여 통상현안 해결 및 협력사업 진행 필요
- 우리기업들의 中·日 시장진출 애로를 해소하고, 3국간 경제협력으로 중견·중소기업의 동북아 시장 확대진출 지원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사업명					
▪ 한중일 통상협약체 운영지원	21	75	95	20	27
▪ 한중일 협력분야 공동연구	-	25	-	△25	△100
▪ 외국의 통상환경 관련 책자발간	-	-	-		
□ 비목					
▪ 일반수용비(210-01)	13	67	55	△12	△18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0				
▪ 임차료(210-07)	0				
▪ 국내여비(220-01)	0				
▪ 국외업무여비(220-02)	0	20	25	5	25
▪ 업무추진비(240-01)	8	13	15	2	15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연례적으로 개최되었던 '한중일 통상장관회의' 재개 및 개최 공고화
- '한중일 통상분야 고위실무자 회의' 개최를 통해 통상협력 강화 및 협력사업 발굴 등 역내 경제협력 확대 추진
- 우리기업의 동북아 시장 개척활동 지원 및 기 진출 기업들에 대한 경제·통상 관련 정보 제공

<한중일 통상협력 5개년 계획>

- 1단계('14) : 한중일 3국간 협력채널 구축, 운영 추진
 - * 협력채널 : 장관급, 고위 실무자급, 민간(연구기관 포함)
- 2단계('15~'17) : 협력채널 공고화, 한중일이 공동참여하는 협력사업 시행
- 3단계('18) : 협력사업을 토대로 우리기업의 중국 및 일본 내수 시장 진출 지원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1.00	▪ 한중일 통상협의회 운영지원 및 후속사업 추진 등
'15	0.95	▪ 한중일 통상협의회 운영지원 및 후속사업 추진 등
'16	0.84	▪ 한중일 통상협의회 운영지원 및 후속사업 추진 등
'17	0.91	▪ 한중일 통상협의회 운영지원 및 후속사업 추진 등
'18	0.77	▪ 한중일 통상협의회 운영지원 및 후속사업 추진 등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 16조 통상협력국
 - * 10조 각국 및 각 지역 관련 기업의 무역, 해외영업활동 및 기술협력지원
 - * 11조 각국 및 각 지역과의 통상장관 회담 등 통상관련 협의체 운영
 - * 12조 각국 및 각 지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 조정 등
- 추진경위
 - 본 사업은 98년 통상교섭본부 출범 이후 통상기능 강화를 위해 추진
 - 2013년 신정부 출범 이후 조직개편으로 통상기능이 산업부로 이관되어, 외교부 통상투자진흥강화 및 현안분쟁관리(1,604백만원) 중 일부 예산 이체
 - '02년이후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한중일 통상장관회의 등 협의체 운영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한중일 통상협력 기반구축	-	-	1.22	1.0	0.9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3년도 한중일통상협력기반구축 총 예산의 17.2% 집행
 - 한-일 및 중-일 외교관계 악화로 인해 '12.5월 이후 3국간 정상회의 및 통상 장관회의가 일시 중단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1.22	-	-	1.22	21		1.01
	()	()	()	()	()	()	()

※ '13년부터 별도사업으로 운영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예산 집행이 부진함(국회 조경태 의원실 등)
 - 한-일 및 중-일 관계 개선시 3국간 통상장관회의 재개 가능성 상존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 해당사항 없음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사항 없음

통상교섭실

통상교섭실 세출예산현황

(백만원, %)

사업명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일반회계>	5,843	6,299	6,975	676	10.7
○자유무역협정체결및후속조치	5,239	5,449	5,975	526	9.7
○통상분쟁대응	604	850	1,000	150	17.6

자유무역협정체결및 후속조치(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자유무역협정체결및 후속조치	5,239	5,449	5,975	526	9.7

* 사업코드 : 21-11-0-110-113-1900-1937-401

* 담당자 : FTA정책관(김학도), FTA정책기획과장(김완기, 044-203-5740), 주무관(김진상, 044-203-5746)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0년~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해당없음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2. 사업목적

- FTA 추진정책 수립, 협상, 이행을 통한 글로벌 FTA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해외시장 확보와 안정적 교역·투자 확대
 - 산업 통상형 FTA 추진을 통해 업계 실질이익 제고 및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
 - 외국인 투자의 유치 확대를 위한 기반조성을 통해 경제 선순환에 기여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FTA협상(체결) (2,567백만원)

- 중남미, 중동, 중앙아, 북아프리카 등 신흥유망시장국가와의 FTA 추진
- 중국, 베트남 등 既타결국과 가서명, 서명 등을 위한 협의 지속

* 협상보조 인건비 (144백만원), 운영비(자료발간, 법률자문 등) (1,067백만원), 여비 (797백만원), 업무추진비(112백만원), 연구용역비(225백만원), 임차료(222백만원)

② FTA 이행 및 후속조치 (996백만원)

- 현재 52개국과 15건의 FTA 타결('14.12월 기준)에 따른 협정문 이행 및 후속조치

* 운영비(자료발간, 법률자문비, 분쟁패널대응 등)(488백만원), 여비(258백만원), 업무추진비(90백만원), 연구용역비(70백만원), 임차료(90백만원)

③ 한미 FTA의 원활한 이행을 통한 한미간 신경제통상 구축 (865백만원)

- 한·미 통상현안 관련 미 의회 상하원 등 의회자문, 분쟁가능성 검토 등 법률자문, 통상네트워크 구축 비용 요구(\$833,500)

* 경제통상분야 미 의회 자문회사 2개 (\$350,000, 1.4만불/월*2개사)
 * 이행 관련 분쟁해결 및 법률자문을 위한 법률회사 (\$183,500)
 * 한미 FTA 활용효과 극대화를 위한 대미경제통상네트워크 구축 (\$300,000, 약2.5만불/월+소요경비)

④ 통상협정 번역 및 검독 (531백만원)

- 3단계 번역검독 시스템에 따라 번역·검독 기능 수행

1단계	⇒	2단계	⇒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 초벌 작성 • 양허표 번역의뢰 등 외부기관의 조력을 거쳐 협상 담당과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한글본 작성 • 협상단, 관계부처 실무 의견을 참조하여 통상법무과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한글본 작성 • 외부기관(법률회사나 관세법인 등)자문 등을 통해 통상법무과가 작성 및 법제처 심사

* 번역전담 인건비(에디터)(126백만원), 번역검독 외부자문(320백만원), 번역관련 시스템 유지보수(10백만원), 여비(60백만원), 업무추진비(15백만원)

⑤ 동아시아 경제통합논의 대응체제구축 (1,016백만원)

- RCEP*(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통해 기존 ASEAN+1 FTA를 보완하고, 역내 기체결 FTA 및 새로운 FTA(한·중·일 FTA 등)들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

* ASEAN(주도)+ 6(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 '15년 가을 한국에서 개최되는 RECP협상은 '15년 타결 목표를 감안한 실질적 마지막 협상인 바, 각국의 높은 관심도와 각국 대표단 예상 규모를 고려하여 예산 편성

* 16개국 600~700여명이 참석, 10여개 작업반 회의 동시 진행 예정

* 운영비(자료발간, 법률자문 등)(320백만원), 여비(50백만원), 업무추진비(100백만원), 연구용역비(50백만원), 임차료(496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전세계적으로 국가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지는 국제적 흐름 추세에 따라 세계 주요국들은 자국의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FTA를 적극 추진 중
 - 우리나라 입장에서 FTA 정책 추진은 기존의 해외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므로 반드시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자유무역협정체결및후속조치	5,239	5,449	5,975	526	9.7
▪ FTA협상(체결)	1,903	2,174	2,567	393	18
▪ FTA이행 및 후속조치	801	800	996	196	25
▪ 한미FTA의 원활한 이행을 통한 한미간 신경제통상 구축	1,597	1,124	865	△259	△23
▪ 통상협정 번역 및 검독	420	531	531	-	-
▪ FTA이행분쟁패널대응	0	170	0	△170	△100
▪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대응체제 구축	518	650	1,016	366	56
☐ 비목	5,239	5,449	5,975	526	9.7
▪ 일용임금(110-03)	251	270	270	-	-
▪ 일반수용비(210-01)	2,559	3,270	3,070	△200	△6
▪ 임차료(210-07)	473	440	808	368	84
▪ 국내여비(220-01)	7	30	30	-	-
▪ 국외업무여비(220-02)	1,095	967	1,135	168	17
▪ 사업추진비(240-01)	227	222	317	95	43
▪ 연구개발비(260-00)	627	250	345	95	38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동아시아 역내통합을 주도하고, 주요 전략국 및 자원 부국과의 FTA 추진으로 글로벌 FTA 네트워크 강화
 - 한중일 등 주요국과의 FTA를 지속추진하되, 농수산업·중소기업 등 민감 분야 보호
 - RCEP(역내 포괄적 경제협정), TPP(환태평양 자유무역협정) 등 다자간 지역 경제통합 논의 대응
 - 신흥국가와의 FTA 적극 추진 및 중동 등 자원부국 FTA 추진여건 조성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59.75	▪ FTA협상체결(25.67), FTA이행 및 후속조치(9.96), 한미FTA의 원활한 이행(8.65), 통상협정 번역 및 검독(5.31),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대응체제 구축(10.16)
'15	59.75	▪ FTA협상체결(25.67), FTA이행 및 후속조치(9.96), 한미FTA의 원활한 이행(8.65), 통상협정 번역 및 검독(5.31),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대응체제 구축(10.16)
'16	59.75	▪ FTA협상체결(25.67), FTA이행 및 후속조치(9.96), 한미FTA의 원활한 이행(8.65), 통상협정 번역 및 검독(5.31),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대응체제 구축(10.16)
'17	59.75	▪ FTA협상체결(25.67), FTA이행 및 후속조치(9.96), 한미FTA의 원활한 이행(8.65), 통상협정 번역 및 검독(5.31),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대응체제 구축(10.16)
'18	59.75	▪ FTA협상체결(25.67), FTA이행 및 후속조치(9.96), 한미FTA의 원활한 이행(8.65), 통상협정 번역 및 검독(5.31),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대응체제 구축(10.16)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통상절차법(2012.7.18 발효)
-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제37조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42호) 제4조 및 제17조

-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FTA 추진 정책 시행
 - 1998년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 정책을 추진키로 결정
 - 2003년 9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된 “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 FTA 체결 사업 본격 추진
 - 2004년 3월 FTA체결절차규정(대통령훈령)」 제정
 - 2004년 5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FTA 추진로드맵’ 보완
 - 2013년 6월 산업과 통상의 연계 강화를 기조로 한 ‘신통상로드맵’ 발표
 - FTA 추진 조직 확대
 - 2004년 10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내에 자유무역협정(FTA)국을 신설키로 결정
 - 2008년 3월 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내 자유무역협정정책국과 자유무역협정교섭국으로 FTA 추진 조직을 개편
 - 통상기능 일원화에 따라 FTA 추진 조직 이관
 - 2013년 3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로 조직 및 예산 이체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자유무역협정체결및후속조치	50.7억	55.18억	57.69억	54.49억	59.75억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결산표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50.7	0.55	0.3	51.55	47.45	1.12	2.98
	()	()	()	()	()	()	()
'12년	55.18	1.12	△0.56	55.74	53.85	0.4	1.49
	()	()	()	()	()	()	()
'13년	57.69	0.4	1.57	59.66	52.39	3.27	4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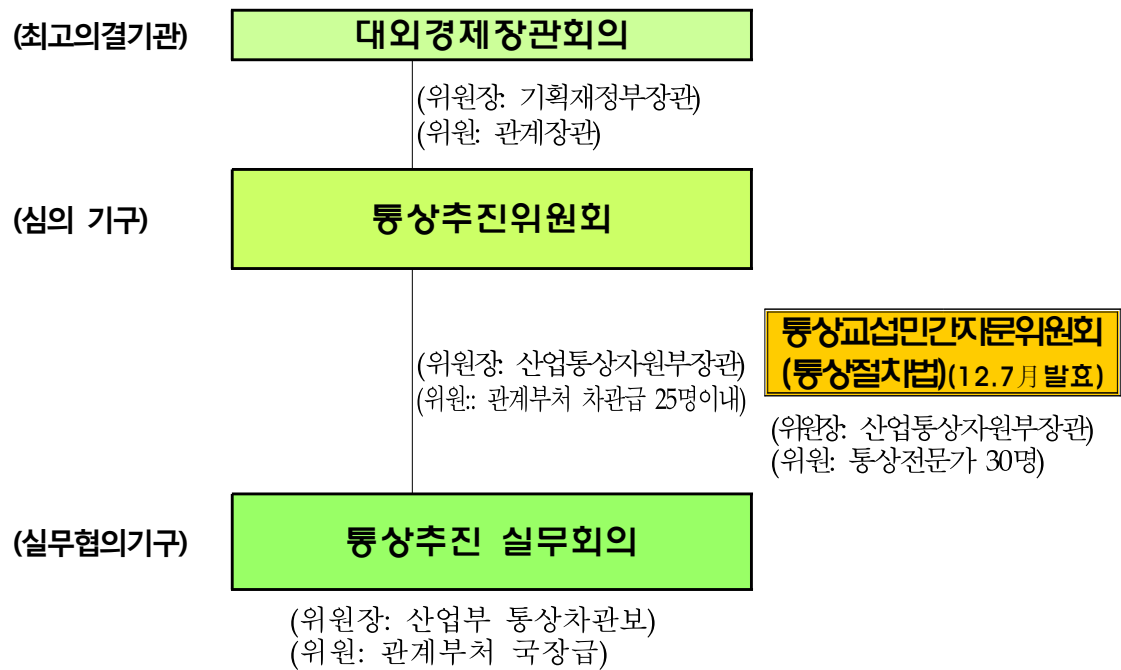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지적사항	대책
(‘11년 국회 외통위 2012년 예산검토 보고서) · “한미FTA의 원활한 이행을 통한 한미 간 신경제통상 구축 사업” 중 홍보 관련 예산 감액 조정 의견 -한·미 FTA 미국 비준 완료를 들어 감액 주장	(기반영) · 12년도 홍보 관련 예산 3억 전액 삭감 -이에 따라 동 사업예산 규모 감액(24억→21억)
(‘12년 국회 외통위 2011년도 결산 검토보고서) · 한미, 한-EU FTA 협정문 번역오류로 인한 전용 과다를 지적 -이에 따른 여타 FTA 추진 지연 문제 언급	(기반영) · 번역검독 시스템 정비·개선 예산을 2012년 예산에 반영 - 협정문 검독을 위해 예기치 않은 검독·자문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예산 전용이 불가피했음을 설명
(‘13년 국회 산업위 2012년도 결산 검토보고서) · 내역사업 예산간 편성 당시 계획과 상이하게 집행된 부분 있음을 지적	(기반영) · 편성 당시 계획과 상이하게 집행된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되, 사업 특성상 협상 상대국 입장, 협상 진행상황(협상 중단·재개 등), 분쟁발생여부 등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 있음을 설명
(‘14년 국회 산업위 예산심의) · 집행실적이 없는 FTA이행분쟁패널대응 사업을 유사기능사업인 FTA이행및후속 조치사업과 통합할 필요	(기반영) · ‘15년부터 FTA이행및후속조치사업과 FTA이행분쟁패널대응사업 예산을 통합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통상분쟁대응(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통상분쟁대응	604	850	1,000	150	17.6

* 사업코드 : 21-11-0-110-113-1900-1936-401

* 담당자 : FTA정책관(김학도), 통상법무과장(홍영기, 044-203-5770), 주무관(김성은, 044-203-5774)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99~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해당없음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2. 사업목적

- 우리 교역 상대국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를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제소하고, 우리 정부가 피소될 경우 이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통상 이익 보호
- 우리나라 및 교역 상대국의 경제 및 통상 관련 조치가 WTO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상시 검토하고, 법적 대응조치 강구
- 세계 경기 회복 둔화 등 국제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간 통상 마찰을 예측하고, 사전적·사후적 대응책을 마련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WTO 당사자 분쟁 대응: 616백만원

- 우리나라가 직접 제소국/피소국으로 참여하는 WTO 분쟁 대응
 - ※ (진행중 분쟁) WTO 한-미 세탁기 분쟁:
'13년초 미국측이 우리 업체들에 대해 부당하게 부과한 반덤핑·상
계관세 부과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
- 산출근거(당사자 분쟁 2건 대응 기준)
 - 법률자문비(537백만원)
 - 관련 출장비(69백만원): 국내여비 4백만원, 국외여비 65백만원
 - 법률전문가, 외국 정부인사, 업계인사와의 업무협의(10백만원)

② 기타분쟁대응: 277백만원

- 기타분쟁대응 사업은 △WTO 분쟁 3자참여, △DSU 개정협상, △기타
통상현안에 대한 법적 분석 등을 포함.
- 산출근거
 - 법률자문비(193백만원)
 - 관련 출장비(76백만원): 국내여비 1백만원, 국외여비 75백만원
 - 법률전문가, 외국 정부인사, 업계인사와의 업무협의(8백만원)

③ WTO/FTA 분쟁 모의재판: 40백만원

- 국제 통상분쟁에 대한 관심 제고 및 분쟁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목적을
관련 전공 학부/대학원생을 대상으로 WTO/FTA 모의재판대회 개최
 - ※ 2010-14년간 총 5회의 모의재판 대회가 개최됨. (1,2회: 서울대, 3회:
성균관대, 4회: 연세대, 5회: 고려대 개최)
- 산출근거
 - 대회 참석자 리셉션, 관계자 오만찬 등(20백만원)
 - 관계자(패널리스트, 운영위원 등) 수당 및 행사용품 구입(20백만원)

④ 통상분쟁 대응기반 마련: 15백만원

- 통상법 포럼 및 통상법 브라운백 미팅 개최, 통상분쟁·통상법 관련 인사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하여 중장기적 측면에서 통상분쟁 대응기반 구축
- 산출근거
 - 통상법 포럼, 통상법 브라운백 미팅 개최 등(12백만원)
 - 통상 관련 참고책자 발간 및 도서 구입(3백만원)

⑤ 통상법 아카데미: 52백만원

- 우리부 주재관 지원 희망자·수습 사무관·통상업무 담당직원 등을 대상으로 통상 전문인력 육성·관리를 위한 통상법 교육과정 개설
- 산출근거
 - 교육과정 개설비용(2개 과정, 40백만원)
 - 비디오 촬영비, 인쇄비, 소모용품 구입 등(10백만원)
 - 업무협약 및 참석자 도시락 구입(2백만원)

□ 지원 필요성

(WTO 당사자분쟁 대응 / 기타 분쟁대응)

- 통상분쟁의 경우 정치적·사회적으로 민감할 뿐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이익에도 직접 연관되어 있는 사안인바, 적극적·효과적 대응이 긴요
- 최근 우리나라산 제품들에 대한 무역구제조치가 증가하는 추세로, 향후 2-3년간 우리나라와 관련된 WTO/FTA 분쟁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

(WTO/FTA 분쟁 모의재판)

- WTO/FTA 분쟁 모의재판은 통상분야 젊은 인재들을 발굴, '통상분쟁 대응의 국산화'에 중장기적으로 기여하고, 통상 이슈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데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

(통상법 아카데미)

- 우리부의 통상기능 강화 및 통상분야 전문인력 육성·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부내 교육과정('통상법 아카데미') 개설
- 동 교육과정은 주재관 지원 희망자, 수습 사무관, 통상업무 담당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통상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통상분쟁대응	604	850	1,000	150	17.6
▪ WTO 당사자 분쟁대응	186	470	616	146	31.1
▪ 기타 분쟁대응	337	273	277	4	1.5
▪ WTO/FTA 모의재판	40	40	40	0	0
▪ 통상분쟁 대응기반 마련	41	15	15	0	0
▪ 통상법 아카데미	0	52	52	0	0
☐ 비목	604	850	1,000	150	17.6
▪ 일반수용비 (210-01)	493	666	803	137	20.6
▪ 국내여비 (220-01)	0	0	5	5	100
▪ 국외여비 (220-02)	76	140	140	0	0
▪ 업무추진비 (240-01)	35	44	52	8	18.2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우리나라의 통상 이익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분쟁이 발생시, 적시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
- 국가간 통상분쟁은 무역구제(반덤핑, 상계관세) 관련 분쟁 외에도, 검역·환경·기술규제 등 분쟁이슈의 다양화에 대한 대비도 중요
- 통상법 포럼, 통상법 브라운백 미팅 등 현재 추진중인 행사들의 활성화 및 내실 강화를 통해 관련 전문가 풀을 확보하고, 산업-통상간 연계성을 강화, 중장기적인 통상대응능력 강화

- 통상분야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통상법 아카데미 운영 및 WTO/FTA 모의재판 지원 사업 지속 추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FTA 분쟁대응 및 통상 관련 법률자문 6.6 ▪ 분쟁대응 관련 국외출장 1.4 ▪ 통상법 관련 행사 개최 및 분쟁관련 유관인사 접촉 0.5
'15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FTA 분쟁대응 및 통상 관련 법률자문 8.0 ▪ 분쟁대응 관련 출장 1.5 ▪ 통상법 관련 행사 개최 및 분쟁관련 유관인사 접촉 0.5
'16	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FTA 분쟁대응 및 통상 관련 법률자문 7.0 ▪ 분쟁대응 관련 출장 1.3 ▪ 통상법 관련 행사 개최 및 분쟁관련 유관인사 접촉 0.5
'17	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FTA 분쟁대응 및 통상 관련 법률자문 7.6 ▪ 분쟁대응 관련 출장 1.4 ▪ 통상법 관련 행사 개최 및 분쟁관련 유관인사 접촉 0.5
'18	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FTA 분쟁대응 및 통상 관련 법률자문 6.5 ▪ 분쟁대응 관련 출장 1.2 ▪ 통상법 관련 행사 개최 및 분쟁관련 유관인사 접촉 0.4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제37조,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442호) 제4조, 제17조 및 WTO 분쟁해결절차규정(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 추진경위

- 사업 신설연도: 1999년

※ 1995년 WTO 체제 출범 이후, 회원국간 무역 분쟁은 WTO 분쟁 해결절차 규정(DSU)에 의거, WTO 패널 및 상소기구 절차를 통해 해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통상분쟁대응 사업이 신설됨.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통상분쟁대응	9.0	8.5	7.8	8.5	10.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1년(불용 0.6억원): WTO 캐나다 쇠고기 분쟁(DS391)의 정지로 일부 불용 발생

○ 2012년(불용 2.7억원): 우리나라가 제소한 미국 도금강판-반덤핑 조치 분쟁 정지 및 캐나다가 제소한 쇠고기 수입 분쟁의 종료로 일부 불용 발생

※ 캐나다산 쇠고기 제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입금지 조치 분쟁(DS391)
- 패널설치(2009.8.31), 합의에 따른 분쟁 최종종결(2012.6.19)

※ 도금강판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조치 재심 제로잉 분쟁(DS420)
- 양자합의요청(2011.1.31), 패널설치요청(2012.2.9), 패널정지(2012.6.12.)

○ 2013년(전용 △0.8억원, 불용 0.1억원)

- 전용 △0.8억원: 정부조직개편(통상업무 이관)에 따른 비밀문서 시스템 구축(기재부 승인)

- 불용 0.1억원: WTO 분쟁일정 지연 및 기체결 FTA 관련 분쟁 미발생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9.0	-	-	9.0	8.4	0	0.6
	()	()	()	()	()	()	()
'12년	8.5	-	-	8.5	5.8	-	2.7
	()	()	()	()	()	()	()
'13년	7.8	-	△0.8	7.0	6.0	-	1.0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내 법률자문가의 국외여비를 일반수용비로 집행하는 것은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관련 경비를 국외업무여비(220-02)로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음. ('13년 국회 예정처 2012년 결산보고서)

(우리부 입장)

- 현재 '국내 법률자문가의 국외여비'를 국외업무여비(220-02) 목으로 집행중이며, '14년 예산편성시에도 국외업무여비 목으로 편성함(조치완료)
- 사업 예산 불용이 과다하며 각 내역사업의 분류에 부합하지 않는 업무추진비 집행이 있었으므로, 업무추진비를 실소요에 맞게 내역사업별로 편성·집행할 필요 ('13년 결산 산업위 소위)

(우리부 입장)

- 통상분쟁대응 사업의 업무추진비는 분쟁 동향 파악,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에 소요되며, 이는 직접적인 분쟁대응 보다는 중장기적 분쟁 대응기반을 마련하는 경우가 다수인바, 그간 '통상분쟁 대응기반 마련' 내역사업으로 편성·운영해옴
- ※ 통상분쟁대응 사업은 △WTO 당사자 분쟁 대응, △기타분쟁대응, △WTO/FTA 모의재판, △통상분쟁 대응기반 마련 등 4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
- 향후에는 보다 직접적으로 분쟁대응과 관련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역사업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 목을 내역사업별로 나누어 편성 및 집행토록 하겠음(지적사항 수용)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 참고자료(WTO 분쟁해결 절차도) 참조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WTO 분쟁해결 절차도

참고

WTO 분쟁해결 절차도

